



전국재해대책협의회

2002
연보



인사말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기상 이변 때문에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상 유례가 없었던 봄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바닥나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뭄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재협)는 범국민적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총 164억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 소중한 성금으로 양수장비 등을 마련해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촌 지역에 신속히 전달했고, 그 결과 가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양수장비와 암반관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또 총 9149세대, 2만79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여름 집중호우 때는 300여 억 원의 성금과 물품 60여 만점을 긴급 지원해, 이재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저희 재협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세계 각국은 모범적인 재해 구호 활동 사례로 평가하고, '또 하나의 한국 연구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재해 극복 활동에 앞장서온 저희 재협은 앞으로도 재해 구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가뭄과 집중호우 때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학래



2002 연보 목차

- 인사말 01
- 목차 02
- 화보집 09

I. 협의회 소개 04

- 1. 창립배경
- 2. 창립목적
- 3. 설립 역사
- 4. 조직 소개
- 5. 사업 내용
- 6. 역대 회장
- 7. 회원 명단

II. 2001 구호실적 17

- 1. 2001 재해피해상황
- 2. 재해 의연금 모금 현황
 - 1) 전체 모금
 - 2) 구분별 모금
- 3. 재해 의연금 지원 현황
 - 1) 일자별 지원
 - 2) 시도별 지원
- 4. 재해 의연품 모집 현황
- 5. 재해 의연품 지원 현황

III. 2001 재해극복 22

- 1. 2001 가뭄극복
 - 1) 우리나라 가뭄의 특성
 - 2) 가뭄 피해 현황
- 2. 2001 수해극복
 - 1) 우리나라의 장마
 - 2) 수해 피해
- 3) 함께 극복하는 장마: 장마 대비 주민행동요령



IV. 2002 재해 구호 활동계획

1. 2002 재해구호지침
2. 2002 재해모금계획
3. 재해 의연금 모금 절차
4. 재해 의연금 지원 절차와 기준
5. 관련 법령

V. 기획 특집 : 구호활동 개선 방안

1. 재해구호물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2. 실무자들이 말한다
3. 재해관리 행정체제 개선방안

VI. 이제까지의 구호실적

1. 1997년

- 1) 1997 재해피해상황
- 2) 재해 의연금 지원

2. 1998년

- 1) 1998 재해피해상황
- 2) 재해 의연금 모금
- 3) 재해 의연금 지원
- 4) 재해 의연품 모집
- 5) 재해 의연품 지원

3. 1999년

- 1) 1999 재해피해상황
- 2) 재해 의연금 모금
- 3) 재해 의연금 지원

4. 2000년

- 1) 2000 재해피해상황
- 2) 재해 의연금 모금
- 3) 재해 의연금 지원
- 4) 재해 의연품 모집
- 5) 재해 의연품 지원

VI. 보도 자료

VIII. 원고 모집 안내





I. 협의회 소개

1. 창립 배경

1961년 이전부터 이어져온 각 언론사의 「이재민 의연금품 모집 운동」은 1961년 7월에 발생한 대구 규모 수해 때는 전국의 모든 언론기관이 수재민 돕기 의연금품 모집에 참여하는 협동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 언론사에서 모아진 구호금품은 언론사 각각의 자율적 구호 기준에 따라 집행되었기 때문에 「중복구호」, 「누락구호」, 「형식구호」 등의 난맥을 표출시켰다. 이에 <구호 창구의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한 각계 언론기관이 주축이 되어 사회 각계 대표자들과 함께 <구호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전국수해대책위원회(전국재해대책협의회 전신)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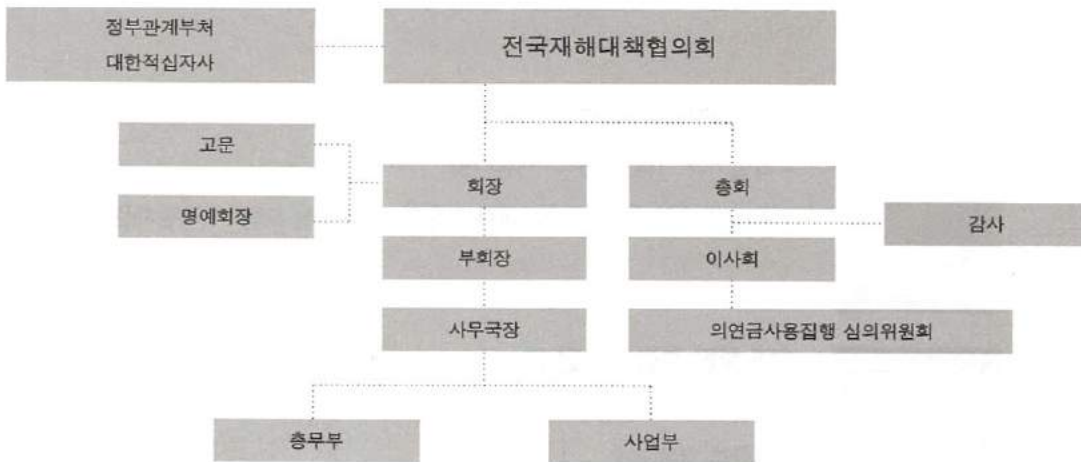
2. 창립 목적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독립된 하나의 민간 상설기구로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불시에 일어나는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구호하는 데 있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돕는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민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을 통하여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선진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설립 역사

- 1961.07.13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 1961.09.26 (가칭)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 준비위원회 조직
- 1961.10.26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총회
- 1961.11.07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 1964.09.03 사회단체 등록
- 1964.10.31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 1965.08.12 체신부 장관, 수재민구호 의연금 첨가우표 발행 승인
- 1967.05.30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제정
- 1968.10.15 사단법인으로 개편
- 1970.05.10 '사랑의 열매' 전국 각 기관·학교·기업에 배부
- 1979.05.30 문교부, '사랑의 열매' 모금 시행 승인
- 2001.11.29 재해구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1.12.19 재해구호법 공포
- 2002.09.20 '전국재해구호협회' 발족예정

4. 조직 소개



5. 사업 내용

재해이재민 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사업

-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 모집
- 신속한 재해이재민 구호 및 생활 기반안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모금운동 전개
- 각 언론사 및 본회를 통해 기탁된 의연금품 배분

재해 구호물품 지원사업

-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의 준비와 타 구호기관과 협조
- 구호물품 광역창고 운영을 통한 효율적 구호물품 지원

재해구호 연구·조사 사업

- 재해 전문구호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 활동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선진화된 구호통합체제의 구축
- 국제협력을 통한 중·장기적인 재해구호 연구의 활성화
- 정기적인 간행물 및 세미나를 통한 재해구호 연구 활동

6. 역대회장소개



초대 회장: 유진오

- 재임기간: 1961.07 ~ 1961.09

- 초대 법제처장, (전) 고려대학교 총장 · 통일원 고문 · 국정자문위원



2대 창립 회장: 류달영

- 재임기간: 1961.09 ~ 1963.04

- 서울대 명예교수



3대 회장: 이관구

- 재임기간: 1963.05 ~ 1964.01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대회장, (전) 한국 신문연구소장



4대 회장: 임병직

- 재임기간: 1964.02 ~ 1964.10

- 초대 외무부 장관, (전) 워싱턴 한인협회 수석비서 · 국제연합 한국협회 이사



5대 회장: 고재욱

- 재임기간: 1964.10 ~ 1976.06

- (전) 동아일보사 회장 ·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 위원장 · 전국기자협회장



6대 회장: 류 달 영

- 재임기간: 1976. 06 ~ 1985. 03
- 서울대 명예교수 · (현)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7대 회장: 류 건 호

- 재임기간: 1985.03 ~ 1994.02
- (전) 조선일보사 주필 및 대표이사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8대 회장: 최 종 료

- 재임기간: 1994.03 ~ 1998.04
- (전) 경향신문사 사장 · (현) ABC협회 회장



9대 회장: 방 상 훈

- 재임기간: 1998.04 ~ 2000.03
- (현) 조선일보사 사장 ·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 위원장

7. 회원명단(가나다순)

직위	성명	소속기관
고문	유 달 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 은 순	휘경학원 이사장
회장	최 학 래	한겨레신문사 사장
부회장	김 대 성	제주일보사 사장
	김 상 기	대전문화방송 사장
이사	김 각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문 태 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 권 상	한국방송 사장
	박 수 만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오 건 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은 방 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 영 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 제 훈	중앙일보사 사장
	장 재 구	한국일보사 회장
	최 문 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국장
감사	장 대 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채 수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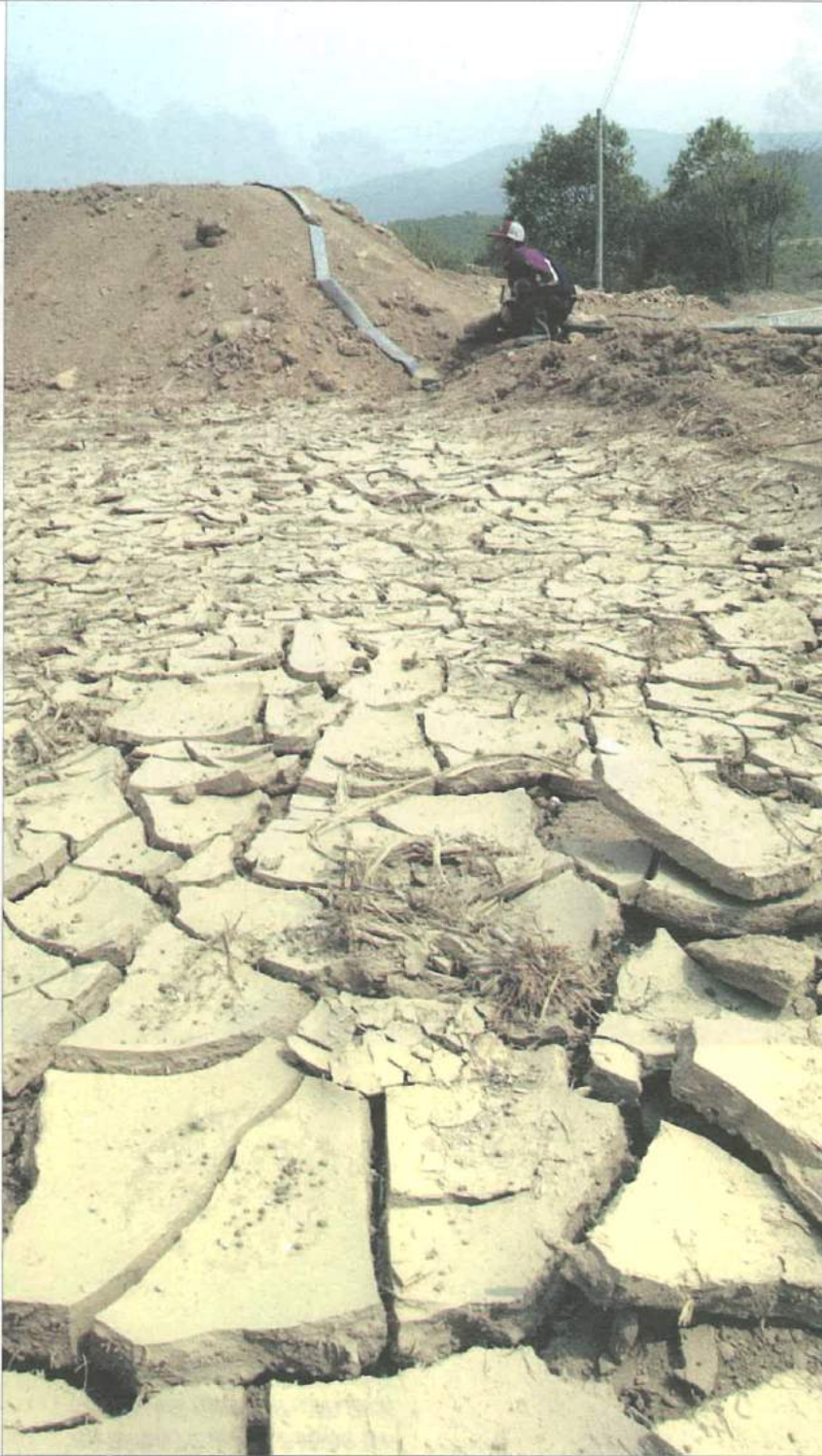
직위	성명	소속기관
회원	강 대 진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권 해 옥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 속 회	대한YWCA연합회 회장
	김 영 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 재 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 정 국	문화일보사 사장
	김 중 배	(주)문화방송 사장
	김 학 준	동아일보사 사장
	노 승 숙	국민일보사 사장
	박 용 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 도 군	(주) S B S 사장
	설 응 수	세계일보사 사장
	서 정 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원장
	유 승 삼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이 남 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 시 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
	이 윤 중	신림조합중앙회 회장
	정 대 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차 석 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 광 수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2001 재해현장 (가뭄)



1주일째 전혀 식수를 먹지 못한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상남마을에서 동네주민들이 식
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으나 말라버린 마을
앞 도랑을 바라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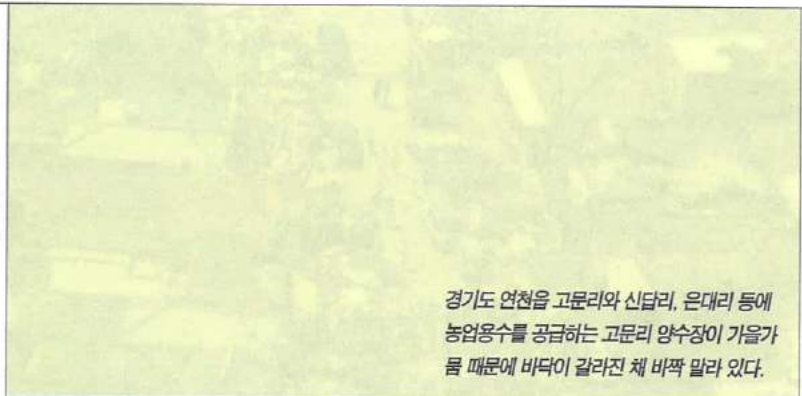
극심한 볼기뚱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전국의 논바다. 강원도 철원군 마천2리에서 한 농민이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논바다에 물줄기를 대주지 못하는 물 호스를 원망스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문바리에서 한 농민이 갈라진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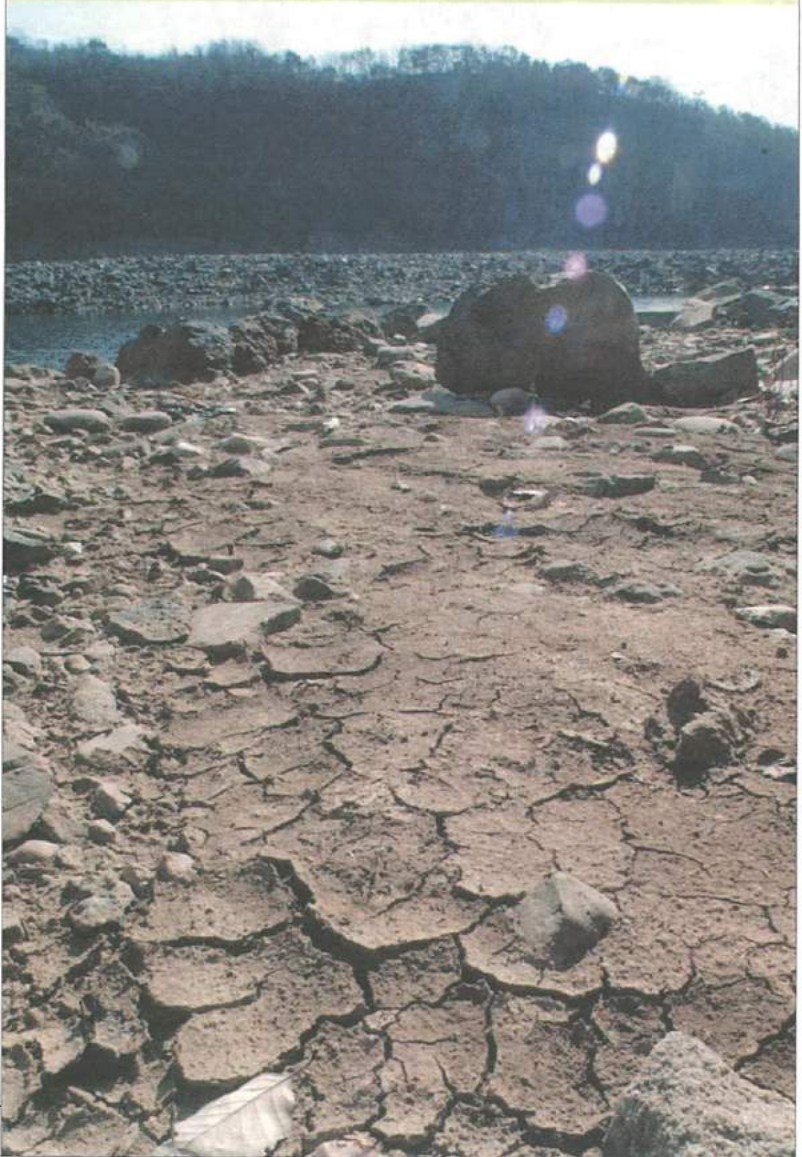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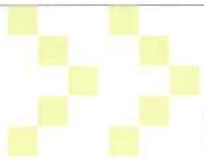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고추 밭에서 한 농부가 말라가는 고추를 살리기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주전자로 물을 주고 있다.



경기도 연천을 고문리와 신달리, 은대리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고문리 양수장이 가뭄가을 때때문에 바닥이 갈라진 채 바짝 말라 있다.





2001 재해현장 (수해)



2001년 7월16일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수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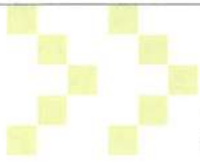
7월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수해현장.



7월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수해현장.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중랑천이 불어나 둔치까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보관대에 걸려 있는 자전거가 손잡이 부분만 드러나 있다(위).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성사천 옆 도로가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제방과 함께 무너져내렸다(아래).





2001 재해복구 현장



6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문
백면 은탄리 은성마을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이 들녘에서 농민
들과 함께 논에 물을 대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서 육군 비룡부대 장병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7월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물로 씻고 있다.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연립주택가에 인근 삼성천 범람으로 골목길에 주차해둔 승용차들이 급물살에 휘말려 뒤엉켜 있는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시장에서 상인과 공무원, 군 장병들이 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



2001 구호활동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 및 이재민 구호, 대규모 참고 건립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물과 흙이 섞여진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오른쪽).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아래 6월8일부터 전국언론기관을 통한 범국민적인 가뭄극복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구호물품 제작을 위해 땀 흘리는 군 장병들의 모습.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구호물품 제작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 중학생들.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제작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간접 수송차량(아래 왼쪽부터).





Ⅱ. 2001 구호실적

1. 2001 재해피해상황 (중앙재해대책본부)

1). 피해 일시 : 2001년 1월1일 ~ 12월31일

2). 피해 원인 : 가뭄 및 호우피해

3). 피해 내용 :

가. 인명피해

사망. 실종 82명

나. 이재민 9,149세대/ 27,933명

다. 침수

건물 122,374동

농경지(기타) 18,984ha

라. 재산피해 1,256,167백만원

○ 건물 359동 (3,178백만원)

전파 115동

반파 244동

○ 선박 51척 (999백만원)

○ 농경지 1,397ha (10,360백만원)

○ 공공 시설

도로·교량 654개소 (54,475백만원)

하천 903개소 (79,153백만원)

소하천 1,783개소 (87,800백만원)

어항 7개소 (298백만원)

수리 시설 939개소 (32,080백만원)

소규모시설 1,798개소 (42,822백만원)

사방(임도) 261개소 (19,598백만원)

수산증양식 383개소 (8,474백만원)

철도 138개소 (9,497백만원)

군 시설 107개소 (19,350백만원)

○ 개인 시설

비닐하우스 4,977ha (339,693백만원)

기타 1식 (219,311백만원)



4) 시·도별 피해액

시·도	인명(명)	재산
서울시	35	584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4	322
광주시		5
대전시		54
울산시		
경기도	30	4,802
강원도	8	2,288
충북도		694
충남도		2,228
전북도	1	182
전남도		66
경북도	1	1,110
경남도		213
제주도	3	13
계	82	12,561

2. 2001년도 재해 의연금 모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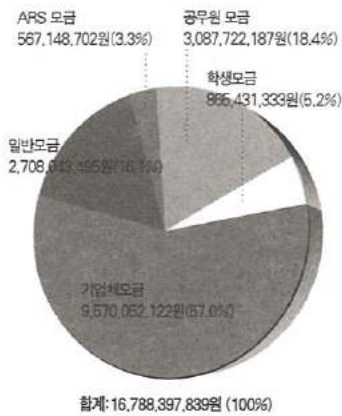
12월31일 최종 마감

(단위: 원)

1) 전체 모금

구분		모금액
합계		16,788,397,839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6,476,684,397
	문화방송	1,579,086,449
	서울방송	427,999,201
	불교방송 외	14,615,577
	방협지역회원사	149,646,239
	방협비회원사 외	30,460,903
	이자수입	1,337,636
	ARS 모금액	557,148,702
	소계	9,236,979,104
신문사	경향신문사	67,636,100
	국민일보사	287,446,098
	동아일보사	1,131,262,395
	문화일보사	126,208,007
	대한매일신문사	136,933,978
	세계일보사	143,952,040
	조선일보사	2,317,371,288
	중앙일보사	835,205,878
	한겨레신문사	87,460,289
	한국일보사	237,258,170
	내외경제신문사	30,679,728
	매일경제신문사	711,634,537
	서울경제신문사	13,881,797
	한국경제신문사	158,213,209
	전자신문사	6,195,971
	신협지방회원사	1,064,878,022
	신협비회원사	132,871,364
	외화 및 이자	4,586,697
	소계	7,493,675,568
	본회접수분	57,743,167

2) 구분별 모금



3. 2001년 재해 의연금 지원 현황

1) 일자별 지원

12월31일 마감

(단위: 원)

지원일자	지원금액	피해내역	비고
2001. 3. 12	765,184,000	2001.1.7~9 폭풍설피해 법정구호비	
12	737,740,000	2001.1.7~9 폭풍설피해 특별위로금	
12	325,240,000	2001.2.15 폭풍설피해 법정구호비	
4. 27	222,620,000	2001.2.15 폭풍설피해 특별위로금	
6. 12	5,000,000,000	한해 의연금 지원 (농림부) 1차분	
15	5,000,000,000	한해 의연금 지원 (농림부) 2차분	
25	310,476,320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비	
8. 08	97,740,000	2001.6.23~7.1 호우피해 법정구호비	
9. 24	162,440,000	2001.6.23~7.1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24	1,036,486,000	2001.1.12~6.16 동해·기름피해 구호비	
24	1,108,971,000	2001.7.5~15 호우피해 법정구호비	
24	24,850,080,000	2001.7.5~15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24	321,225,000	2001.7.21~8.1 호우피해 법정구호비	
24	1,604,400,000	2001.7.21~8.1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10. 15	8,213,000	2001.9.9~14 호우피해 구호비	반환금으로 차감
12. 05	3,699,000	2001.10.10~11 우박피해 이재민 구호비	
계	41,554,514,320		





Ⅲ. 2001 재해극복

1. 2001 가뭄극복

1) 우리나라 가뭄의 특성

가. 2001년의 기상개황

1월부터 2월은 많은 눈이 내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았고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과 하우스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3월부터는 중국내륙 지방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의 유입을 억제하고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세력이 약해짐으로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에 접어들면서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평년에 비하여 강우가 적었다. 본격적인 이앙기인 5월 하순부터 이미 경기, 강원지역에 이앙을 하지 못하는 논 면적이 늘어났다. 특히 경기 북부지방인 연천, 포천 등 지역은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평년에 비하여 아주 적은 비가 내려 가뭄피해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6월에 접어들면서 열대성 고기압의 세력이 한반도 지역에 머물면서 비는 오지 않고 가뭄피해 면적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밭작물의 시들음 면적도 점차 늘어났다. 이같은 중부지방의 가뭄은 기상관측(1904년) 이래 최대의 가뭄으로 기록되었다.

나. 기상학적 특성

2001년 봄철 우리나라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고, 중국 화중지방을 중심으로 고기압이 자주 발달하여 중국 내륙지방에서는 장기간 고온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이 고기압은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건조한 상태를 초래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나는 기압골의 세력이 약하여 강수량이 적었다.

3월 상순 말경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았으며, 중순 중반부터 하순에 걸쳐 남서기류의 유입이 잦아 전국에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월평균 기온은 -0.2(대관령)~11.2도(서귀포)의 분포로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낮았고,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높았다. 월강수량은 2.5(구미, 평년비 5%)~48mm(대관령, 평년비 65%)의 분포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적었다. 4월에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치우쳐 지나감에 따라 주로 제주도에 영향을 주었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도 약하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었다. 월평균기온은 7.7(대관



자료출처: 농림부 발간
(가뭄극복 국민성금 백서:2001 봄가뭄)



령)~15.8도(대구)의 분포로 호남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년보다 조금 높았다. 월강수량은 6.5(강화, 평년비 8.1%)~203mm(서귀포, 평년비 118%)의 분포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평년비는 10~40% 정도로 평년보다 적었다.

5월에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기압골이 우리나라 남쪽 또는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감에 따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월평균기온은 13.4(대관령)~20.5도(대구)의 분포로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았으며, 특히 서울, 경기 및 충청지방에서는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았다. 월강수량은 4.6(충주, 평년비 5.2%)~162.5(서귀포)의 분포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평년보다 적었으며, 중부지방에서는 평년비 20% 이하였다. 5월20일에는 중국 화중지방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남서 기류 유입에 의한 편현상으로 낮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은 강릉을 비롯해 울진(33.9), 춘천(32.9도) 등에서 5월의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었다. 5월22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강수현상이 있어, 남부지방에서는 건조한 상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중북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적었다.

이와 같이 3월 이후 전국이 오랜 가뭄에 시달렸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한 비가 오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물기근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철원,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했다. 그러나 6월18일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그동안의 가뭄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남부지방은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곳도 있었다.

다. 2001년과 과거의 강수량 비교

최근 우리나라 가뭄을 살펴보면 1966년 10월~1967년 9월, 1967년 10월~1968년 9월, 1976년 10월~1978년 5월, 1981년 10월~1982년 9월, 1987년 10월~1988년 9월, 1994년 1월~1995년 6월 등의 가뭄으로 평균 5년에 1회꼴로 6회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가뭄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의 부족에 기인하였으며 강수가 평년보다 적게 내림으로써 농업용수, 생활용수, 발전용수 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저수율도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용수부족 현상을 겪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월 상순에서 4월 중순 사이 40일간의 평년대비 강수량 비율은 21%로, 가뭄양상이 2001년과 유사했던 1978년의 경우와 비

교해도 34%에 불과해 강수량이 아주 적었다. 또,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 사이 20일간의 강수량도 평년대비 22%, 1978년 대비 30%로 역시 강수량 비율이 낮았다.

(표1) 2001년 순별 강수량

(단위: mm)

구분	2001년(A)	평년(B)	1978년	A/B(%)	
3월	상순	69.9	3.5	60.2	229.7
	중순	86.4	8.9	41.5	194.0
	하순	51.7	3.0	30.6	273.1
4월	상순	33.0	2.1	23.1	227.5
	중순	15.8	0.6	15.4	239.7
	하순	9.0	0.5	6.3	81.9
5월	상순	6.2	0.5	6.1	227.5
	중순	11.4	0.2	8.0	1789.2
	하순	3.9	0.2	5.9	226.3
6월	상순	3.5	0.4	4.6	240.4
	중순	6.0	0.4	3.1	252.6

2001년은 2월까지 눈이 많이 내렸지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 6월 3일까지 우리나라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4.9(충주)~377.6mm(서귀포)의 분포로 평년 강수량의 11~71% 수준이었으며, 중부지방에서는 강수량이 25~130mm의 분포로 평년보다 약 150~250mm 정도가 부족하였다.

특히 서울·경기, 충청 및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평년 강수량의 10~30% 정도로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였고 북한의 경우도 황해도, 평안남도에서 평년 강수량 6(남포)~33%(안주)의 분포로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였다. 전국 72개 관측지점 중 48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9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나타내었다. 서울의 경우 2001년 봄철 강수량은 46.9mm로 관측 이래 두 번째의 최소 기록이었고(1위 1965년 38.8mm) 인천과 부산은 1904년 이래 최소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모내기 적기인 5월15일부터 6월5일 사이에 강수량이 20mm 이하인 가뭄 우심지역 50개 시·군과 이곳의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표 2>와 같다.



〈표2〉 가뭄우심지역 50개 시·군과 6월17일~6월19일 사이의 강수량

(단위: mm)

지역별	시·군별 강수량
경인(9)	강화 34, 이천 82.5, 여주 64, 안성 69, 화성 39, 양평 51.5, 파주 43, 연천 46, 포천 44
강원(10)	철원 85.7, 홍천 65, 횡성 80, 양구 82.5, 화천 98.5, 춘천 58.9, 속초 54.6, 양양 42.5, 고성 48.5, 강릉 40
충북(4)	청원 101.1, 보은 119, 음성 75, 괴산 83
충남(9)	서산 80.5, 태안 42, 공주 73, 아산 92, 연기 118, 청양 71, 당진 105, 천안 104.5, 보령 60
호남(6)	남원 124, 순창 113.5, 임실 114, 영광 70.5, 원도 167.8, 신안 63.3
영남(12)	문경 106, 예천 86.4, 안동 52.9, 의성 62, 청송 53.7, 영주 100, 봉화 119.5, 양아 50.8, 영덕 41.5, 창녕 155, 의령 154, 함안 101

2) 가뭄 피해 현황

가. 농작물

(1) 벼의 피해상황

- 용수부족 미이앙 면적

모내기 한계시한은 경기 및 강원 북부가 6월5일, 경기 및 강원 남부가 6월 20일, 충남북은 6월30일, 전남북, 경남북 등은 7월10일이므로 이 한계시까지 모내기를 할 경우, 적기에 이앙한 것보다는 못하나 수확량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용수부족 지역이 6월4일까지는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발생했으나 6월5일 이후는 충남, 경북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용수부족으로 인한 미이앙 면적이 5월17일의 552ha에서 5월25일에는 3,163ha로, 6월7일은 4,476ha, 6월 11일 4,580ha로 점차 증가되었으나, 6월12일 강원지역에 일부 비가 내려 미이앙 면적이 4,229ha로 감소되었다. 6월13일 이후 평균 3,000~4,000ha 정도의 미이앙 면적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급수작전을 통한 용수공급으로 미이앙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 모낸 논 물마름 면적

벼 생육시기 중 활착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모를 낸 후 논이 마르면, 벼뿌리가 활착하는 데 어려움을 주어 생육이 지연된다. 모낸 논의 물마름 면적은 6월8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 등에서 1,704ha였으나 점차 증가되어 6월11일에는 7,683ha, 6월13일 8,562ha, 6월15일

8,715haRkwl였으나 6월17일 이후 전국에 걸쳐 내린 비로 물마름 면적이 해소되었다.

(2) 밭작물의 시들음 면적

시들음(위조) 현상은 뿌리의 흡수력을 감소시켜 생육에 장애를 줄 수 있고 시들음 현상이 계속되면 작물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고사)가 된다. 밭작물 시들음 면적은 6월9일의 7,932ha에서 6월10일에는 10,152ha로 늘어났으나, 6월13일 이후 대대적인 물주기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소나기로 시들음 면적이 감소되어 6월17일에는 5,785ha로 줄었다.

(3) 채소, 특작류의 피해 상황

가뭄이 지속되면서 채소, 특작류의 과중(정식) 면적(112천ha) 중 도별 시들음 면적은 충북 1,365ha, 강원 298ha, 경기 297ha로 나타났고 작물별 시들음 면적은 고추 1,242ha, 참깨 414ha, 마늘 336ha로 경사지 재배가 많은 고추의 가뭄피해가 가장 심했다. 특히 채소는 평야지에서는 관수작업 등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산간 경사지 재배포장은 관수가 곤란하여 한낮에는 일시 시들음 현상이 발생하였고, 고추의 착과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고온과 가뭄이 심하여 착과가 지연되고 진딧물 등 충해 발생도 증가되었다.

(4) 과수류의 피해상황

2001년 가뭄으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단감 및 감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사과는 충주, 영주, 의성 등 충북 및 경북 북부지방에서 피해가 컸고, 배는 남양주, 평택, 천안, 김천 등 경기, 충남, 경북 일부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다. 또한 포도 및 복숭아도 경기, 충북, 경북 일부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다.

피해양상은 사과, 배는 나뭇가지 꺾질이 갈라지거나 말라 죽어 과실이 제대로 크지 못했고 진딧물, 응애 등 해충 발생이 많았다. 포도는 송이가 작아지고 철분 등 미량요소의 흡수저해로 인한 잎 황화현상이 일부 발생되었다.

나. 생활용수

4월에는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지역은 없었으나 도서지역 등 상시급수난 지역인 8개 시·군 19개 읍·면에서 17,705세대(57,141명)에 제한운반급수



를 실시하는 한편 5월 말까지 무강우시 상시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18시·군 43개읍·면의 23,302세대(80,284명)에 대한 제한급수확대를 전망하여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급수계획을 수립하였다.

5월20일까지의 강수량이 전국 평균 204mm로 예년에 비해 108mm나 적어 하천유량도 크게 줄어들고 다목적댐 저수율도 평년보다 5.8%가 감소한 38.3% 정도로 낮아졌다. 따라서 12개 시·군에서 약 5만8천명에 대한 급수를 제한하였다. 이들 제한급수지역은 강원 2개 시·군, 전남 5개 시·군, 경북 1개 시, 경남 2개 시·군, 제주 2개 시·군으로 강원을 제외한 4개 도가 상시 제한급수지역이었다. 급수방법의 유형은 운반급수와 시간제, 격일제, 3일제로 대별된다.

한탄강을 수원으로 하는 경기도 동두천시는 5월13일부터 1일 10천톤씩의 지원과 자체 생산량 1일 21천톤으로 고지대 아파트단지 540세대를 제외한 시내 대부분 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5월18일부터 정상화하였다. 5월 말에는 전남, 경남, 경북지역으로 확산되어 급수제한이 전국 56개 읍·면 3만4천세대 약 11만5천명에 이르렀다.

6월에 들어서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뭄이 더욱 심화되었다. 6월4일 현재 전국 29개 시·군에 약 16만5천명에 대한 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4개 시·군, 충북 7개 시·군, 전남 5개 시·군, 경북 8개 시·군, 경남 5개 시·군이였다. 기존 상수도시설의 수원유형은 계곡수, 복류수, 지하수, 저수지 등이였다. 다시 6월12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 걸쳐 80개 시·군 7만5천여세대 24만5천여명이 급수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식수난은 6월17일에는 최대 86개 시·군 93,615세대 304,815명에게 제한급수를 하게 되었으며, 경북 95,000명, 강원 69,000명, 경남 60,000명, 전남 48,000명, 경기 19,000명, 충북 8,000명, 전북 5,000명이 생활용수이용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급수차량 총 3,719대, 급수운반선 총 143척을 동원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였다.

급수취약지역 실태를 보면 86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역이 계곡수(56개군)나, 지하수(16개군)를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73개 시·군(108,877명)은 간이 상수도를 이용, 단기간 가뭄에도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나머지 13개 시·군(195,938명)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6월17~19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식수난의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2. 2001 수해극복

1) 우리나라의 장마

가. 장마의 특성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란 기상학적으로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세력의 경계면이 우리나라 부근에 동서로 자리잡고 있을 때를 말한다. 겨우내 멀리 하와이 방면에 물러나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을 확장하여 6월 말경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또 겨울 동안 얼음으로 덮여져 있던 오호츠크해는 봄이 되면 녹으면서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눈 녹은 물의 영향으로 대륙에 비해 섭씨 10도 정도 낮은 찬 공기가 머물게 돼 오호츠크 고기압을 형성한다. 이 두 고기압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생긴다.

이때 서쪽으로 뻗어나온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불어 올라오는 상승의 북서기류 사이에도 수렴대가 생긴다. 이 전선과 수렴대는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영향권 아래 놓인다. 이 전선과 수렴대는 장마를 몰고 오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고 불린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이 비교적 약한 6월 중순경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으나 점차 세력이 강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 6월 하순에는 일본 열도, 7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게 된다. 이 무렵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장마전선활동도 점차 약화되어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간다. 7월 하순경에는 장마전선이 만주 국경까지 올라가서 소멸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끝이 나고 본격적인 여름 날씨 즉 무더위가 시작된다.

장마 시중시기 및 기간

지방	시작시기	종료시기	3.5	60.2
중부	6.23~24	7.23~24	32일	238~398mm
남부	6.22~23	7.22~23	32일	199~443mm
제주도	6.19	7.20~21	32일	328~449mm

나. 우리나라 장마 현황

지난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후 평년값을 통해 발표한 기상청의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평균 6월20일경에 시작해 32일간 계속되다가 7월 중순경에 끝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의 장마는 평균 6월19일경 시작해 33일간 계속되다 7월 중순에 끝나고 남부지역은 6월22~23일경 시작해 32일간 계속되다 7월22~23일경에 끝난다는 것이다. 또 중부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늦은 7월23~24일경 시작해 32일간 지속되다 7월23~24일경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은 제주지역이 평균 328~449mm로 가장 많았고, 남부지방은 199~443mm, 중부지방은 238~398mm를 각각 나타냈다.

다. 2001년 장마 현황

지난해에는 중국 화남지방에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함께 북동진하여 7월 14일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북상하여 서울 310.1mm, 인천 219.5mm, 춘천 215.8mm, 동두천 175.4mm, 문산 116.4mm, 철원 140.2mm, 홍천 165.5mm 등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북상하던 장마전선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에 막혀 서울 경기도 및 강원 영서지방에서 정체하였고, 하층 제트기류에 의하여 매우 강한 남서류가 장마전선 상으로 유입되면서 폭이 좁고 강한 수렴대가 중부지방에 형성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100 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라. 2002년 장마 전망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함에 따라 장마가 평년에 비해 다소 빨리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중순경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으며, 6월 하순에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7월 하순경에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장마기간 기상 전망이다.

▷ 6월

6월 상순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여름이 시작되겠으며,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많은 비가 오겠다.

6월 중순경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며, 장마가 시작되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6월 하순에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전국에 두세 차례 많은 비가 오겠으며, 국지적인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

▷ 7월

7월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두세 차례 많은 비가 오겠다. 기온은 장마가 지속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다.

7월 하순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으나,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다.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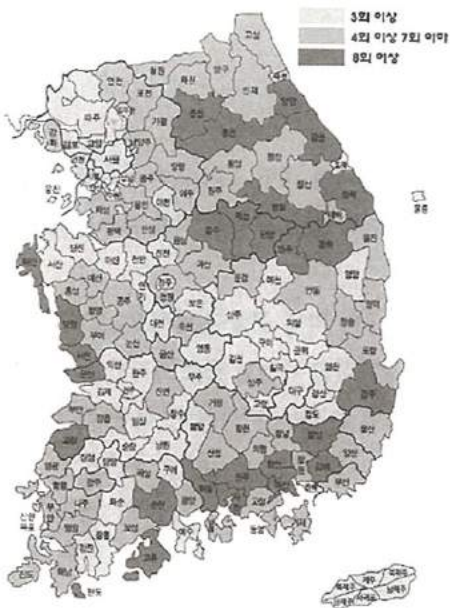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 대기불안정과 남쪽으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다.





2) 수해 피해

가. 최근 10년간 월별 우심피해 발생률(1990~1999)



나. 최근 10년간 월별 우심피해발생률(1990~1999)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912 (100%)	27 (2.96)	31 (3.4)	4 (0.44)	1 (0.11)	5 (0.55)	85 (9.32)	330 (36.18)	219 (24.01)	159 (17.43)	3 (0.33)	27 (2.96)	21 (2.3)
태풍	186 (20.39)							30	69	74	2		
호우	406 (44.52)					1	70	185	75	74	1		
폭풍	36 (3.95)			4	1	4	3		1			10	13
우박	7 (0.77)	6	1										
기타	277 (30.37)	21	30				12	115	74			17	8

3) 함께 극복하는 장마: 장마 대비 주민 행동요령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장마 대비 주민 행동요령입니다.

가. 장마 전 대비 요령

(1) 가정에서

- 우리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수하고, 낮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2) 상습침수지역에서

- 우리 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 두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둡시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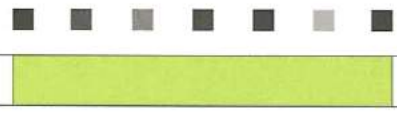
(3)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

-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하고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 보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막읍시다.

(4)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

- 수산증양식 시설물을 점검하여 균열, 파손부분은 사전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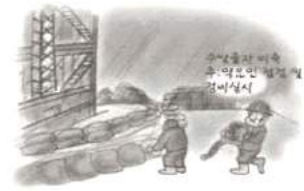


(5)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

-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악화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6) 각종 공사장에서

-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토록 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도록 합니다.



나. 호우 및 태풍이 올 때

(1) 가정에서

-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또한 긴급 사태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 확인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갑니다.

- 집이 침수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합니다.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붕이나 옥상 등에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고 만약 약을 위해 스티로폼 상자, 고무튜브, 뗏목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2) 보행자는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 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합니다.



(3) 차량운행은

-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단기어로 운행토록 하고 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4) 상습침수지역에서는

-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시를 대비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5)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 배수로는 깊이 파주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고 외부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 경사도가 30% 이상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6)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하고 소형선박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어망, 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합니다.

(7)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맙시다.

- 야영 중 강물이 넘칠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 올릴 생각은 하지 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합니다.

- 하천변,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8) 각종 공사장에서는

-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 굴착한 웅덩이에 물이 들어가는지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강 시설 등 안전대책을 강구합니다.

- 또한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 수위상승에 대비해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다. 호우나 태풍이 지나간 후

(1) 침수되었던 집에 들어갈 때는

-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설비, 수도관, 가스관을 점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2) 침수된 농작물 관리

- 즉시 농약을 살포하고 신속히 물빼기를 실시하고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가 심한 작물은 대파를 실시합니다.

(3) 가축 및 축사 관리

-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시설을 점검해 통풍이 잘되도록 하며 가축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4) 수산시설물 및 생물 관리

- 어장 내의 오물 및 흙탕물을 빨리 제거해 주고 신선한 용수로 대체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해 주고 질병여부를 확인하여 어방약제를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해 줍니다.

(5) 재해를 입은 마을에서는

- 이재민은 읍·면·동에서 지정한 수용장소로 이동하고 구호요원의 안내에 협조합니다.

-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 등을 잘 보살피고 필요시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은 이재민 구호는 물론 무너진 가옥, 도로 등 응급복구에 참여합니다.





IV. 2002 재해구호 활동계획

1. 2002 재해구호지침

1. 개요

1) 구호 목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재해”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기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

2) 구호 대상

가. 중앙지원 대상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한 기준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0억원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 : 11억원
-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7억원

나. 중앙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중앙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반영하고, 재해발생시 동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되,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구호계획 및 구호체계

가. 계획수립

(1) 시·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구호기본계획을 수립(4월 말까지)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재해구호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재해구호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5월 말까지)

(3) 재해구호계획 주요내용



-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의료·전염병관리 및 위생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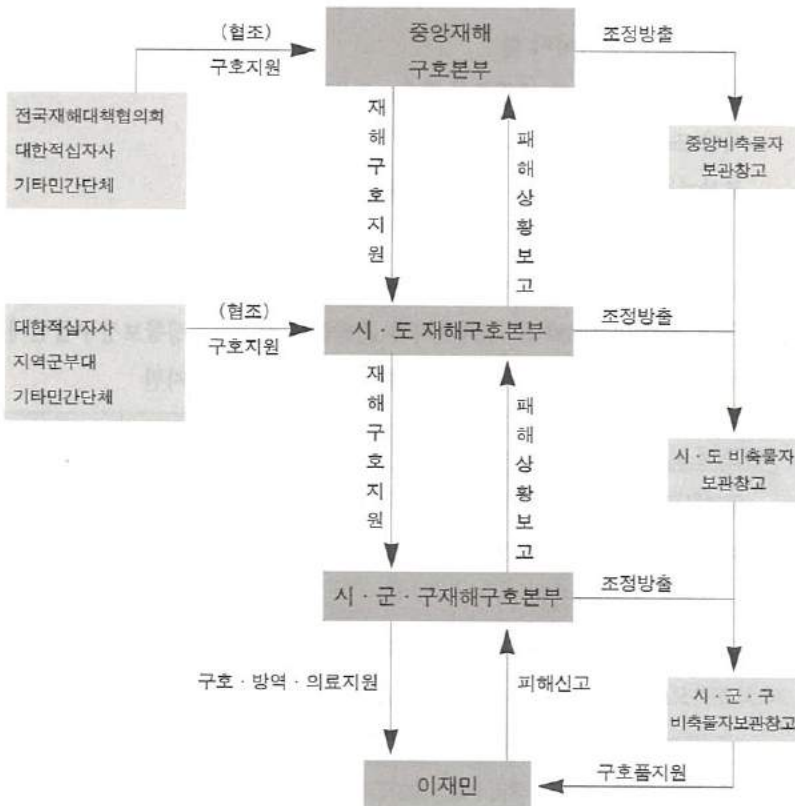
나. 재해구호기구 설치

중 앙 : 재해구호본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도재해구호본부
- 시·군 및 구 : 시·군·구재해구호본부
-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제확립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2.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1) 시·도 재해구호기금 우선활용

가. 중앙지원 대상인 경우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장기생계구호비,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함.

나.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재난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당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효과적인 구호를 위하여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001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함.



2) 지원기준

가.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1) 위로금(장의비 포함)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함.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 1,000만원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 500만원

·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퍼센트 지급

(2) 생계보조금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특례수급권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500만원 지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시 유의사항〉

· 위로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가 지급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세대주는 성별·연령·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가 불투명한 경우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구당 50만원의 장례비 지급

나. 이재민 생계구호

(1) 응급생계구호

-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

- 시·도지사는 이재민의 응급생계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속히 조치

- 수용시설 확보(임시주거시설 설치포함), 식량, 의류, 침구, 취사·난방 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 필수품의 제공

-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관련 단체와 협조

- 기초생활 필수품 지원시에는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자체 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재해구호물품을 구입·지원할 수 있음

(2) 장기생계구호

-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개월 내지 6개월(응급구호기간 7일을 포함)의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

- 농경지 5ha 미만 경작지로서 8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규모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 시설 및 수산 생물 등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 ┌ 농경지 3~5ha 미만 80%이상 피해 : 2개월

- └ 농경지 2~3ha 미만 80%이상 피해 : 4개월

- └ 농경지 2ha 미만 80%이상 피해 : 6개월

- 주택 전파 : 4개월까지, 주택 반파 : 2개월까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세입자(전·월세)는 대상자에 포함

- 10톤 미만 어선의 전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4개월까지

- 10톤 미만 어선의 반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2개월까지





다. 재해복구지원

(1) 세입주자보조비

-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지원

- 장기구호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사하는 날까지의 장기구호비를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장기구호비는 이를 공제하고, 또한 세입주자보조비에서 기 지급한 장기구호비를 공제하고 지원

(2) 침수주택수리비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당 60만원 지원

-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소유자 침수주택을 복구하였을 경우 소요된 경비를 세입주자와 상호 정산토록 함.

3. 전염병관리, 의료구호 및 식품위생관리

가. 방역활동

〈침수주택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재침수의 경우

· 침수된 주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침수된 경우에는「침수주택수리비」를 1회만 지급하고,

· 침수된 주택이 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침수된 경우에는「침수주택수리비」를 다시 지급

· 다만, 특별위로금은 1회만 지급

침수주택임대인(또는 소유자)이 주택수리를 위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나, 세입주자가「침수주택수리비」를 수령하고도 임대인과 수리비를 정산하지 않거나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이사진 경우

· 「침수주택수리비」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지출한 수리비를 세입주자와 임대인이 상호 정산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세입주자가 임대인과 수리비를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위로금을 세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수리한 비용을 특별위로금에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잔액분은 세입주자에게 지급



▷ 폭우 및 침수지역은 주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

- 시·군·구는 약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그 지원을 요청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나. 의료구호

▷ 사상자 구조 및 응급처리를 위하여 119구급대와 구급차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응급진료소를 설치

▷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 진료하게 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 응급의료기관은 지역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이재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를 실시

▷ 이재민 공동수용소에서 환자발생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

다. 식품위생 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급수는 수도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배치하여 급식상태 관리
-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4ppm 이상 유지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반드시 소독하거나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3. 재해구호물자 관리

1) 적용대상

-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전시구호물자 포함)
- ▷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

2) 비축물자 확보

- ▷ 시·도지사는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시·군·구별 재해발생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토록 함.
- *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 파악 관리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 재해구호물자 중 낡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물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함.

3)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 시·도지사는 최근 10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해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재해구호물품창고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시·도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사용하거나 민간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임차할 수 있음.
- ▷ 재해 의연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시·도지사는 평시에 의연품의 효과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불필요 품목과 중복지원 방지).
- ▷ 전시구호물자는 별도 보관·관리하지 말고 재해구호물자와 함께 보관·



사용하되 그 내역을 비치·관리하고, 사용 즉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비축하여 비축 수준을 유지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95.2.27, 복지부 훈령 제5호)”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 상태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물자의 사용

▷ 시·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

▷ 시·도지사는 계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하여 조달

▷ 재해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물자를 상호협의하여 사용

4. 재해구호기금 관리

1)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

2) 기금의 관리·운영

가. 관리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되, 기금의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주관국으로 함.

나. 관리공무원 임용

▷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

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다. 회계관리직업 등의 책임

▷ 회계관리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함.

3) 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구호에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비 :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 기준』

* 중앙지원(국가 등) 대상인 경우에도 기금으로 우선지원 후 정산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비
-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금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지원
- 재해구호물자의 조작 및 운송경비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관련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비용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관리 공무원의 임무

가.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금관리공무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액은 전 10년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중앙지원분 포함)의 연평균 값을 감안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저축성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야 함.

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기금출납명령관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적립금액





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기금납부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입대장에 기록한 후 수입일 또는 익일까지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설치된 지정계좌에 입금시켜야 함.

다. 재해구호기금의 지출

▷ 기금출납명령관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라. 장부 기록·유지

▷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과 지출원인행위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마. 재해구호기금의 사용보고

▷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재해구호 보고

▷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접수된 의연금품이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거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일보고하여야 함.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 현황

- 의연금품 모금 현황

〈대한적십자사〉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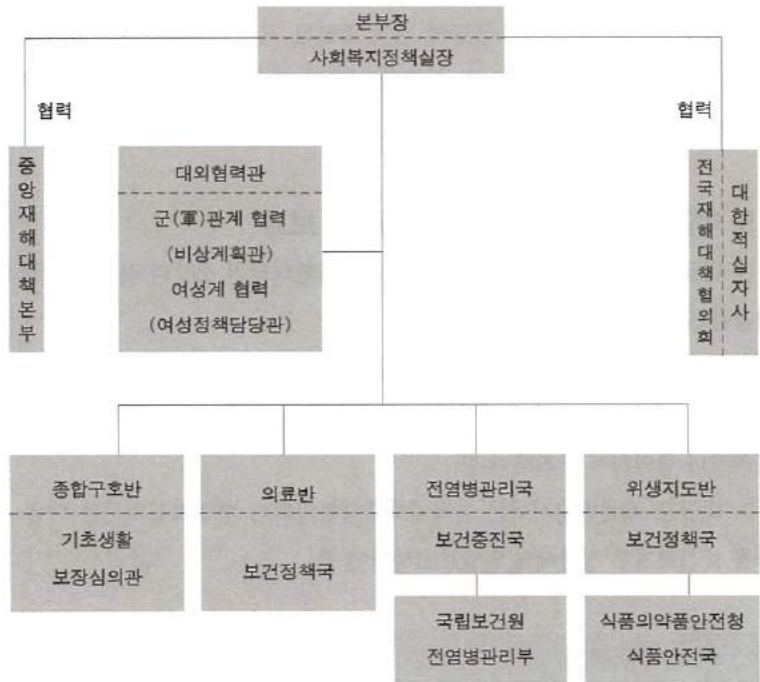
- 급식소 운영 및 자원봉사 현황

6. 행정 사항

▷ 시·도지사는 재해 발생시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일보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02-2110-6181~3, FAX:02-504-6232)

- 이재민 구호 현황
- 전염병관리·의료구호·식품위생지도 활동실적 보고
-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2002.4.30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02.5.30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자체 재해구호계획 또는 재해구호시행지침
-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현황
- 재해구호기금의 예탁 및 집행현황
- 참고별 비축물자 현황

7. 중앙재해구호본부 조직 및 임무



* 각반은 해당국장이 반장이 되며 반별로 3·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교대 근무. 다만, 위생지도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앙재해구호본부에 6·7급 1명을 파견하여 약무식품정책과와 합동으로 근무



▷ 임무

- 본 부 장 : 구호활동본부 업무총괄 및 지휘·통제

- 종합구호반

- 사상자, 이재민, 침수주택 등 재해상황 파악
- 재해구호물품지원 및 부족 물자 조정·점검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반 투입, 자원봉사자, 군부대 인력지원 요청
-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수재의연금 신속모금 지원 및 모금·배분 현황 파악

- 전염병관리반

- 수해지역 방역기동반의 증강 편성·운영 지도
-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 전염병 조기발견 관리체계확립 및 홍보·계몽 강화

- 의료반

- 보건소를 통하여 수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활동 실시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 요청
- 국·공립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요청
- 이재민을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

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 위생지도반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 재해지역을 정기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급식관리

▷ 지방재해구호본부 조직 및 운영

- 시·도에 시·도재해구호본부, 시·군·구에 시·군·구재해구호본부를 둬.

- 각 재해구호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간사 1인과 본부원 약간 인을 두고, 본부장은 사회복지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총괄과장이 됨.

- 현장 구호활동은 대한적십자사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시에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급

2. 2002 재해모금계획

1) 목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재해예방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재정으로 인하여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 전통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천재지변이 발생되면 신속히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의연금품 모집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모금 목표액 : 500억원

3) 모집기간 : 대규모 재해발생시

4) 모금내역

가. 기탁모금 및 ARS 모금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 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라. 방법

(1)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서 징금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토록 한다.

(단, 신문·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송금토록 한다)

(2) 중앙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령하여 재해지역 행정기관의 요청 및 재해지역 이재민 기구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정토록 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 및 지역 적십자사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정토록 한다.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거나 본 협의회와 협의하여 전달토록 한다.)

(3)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탁되는 수재의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대행, 언론기관이나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토록 한다.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4)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수재의연금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 재해의연금 지급시 정산토록 한다.

(5) 언론기관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수재의연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희망할 경우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토록 한다.

(6)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중사급이상,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 금융기관근무 임직원 등으로부터 이 재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품을 기탁토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의뢰한다.

(7)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하회원 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한다.

(8)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한다.

5) 의연금품 사용

가. 모금된 의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비로 지원하거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 의연금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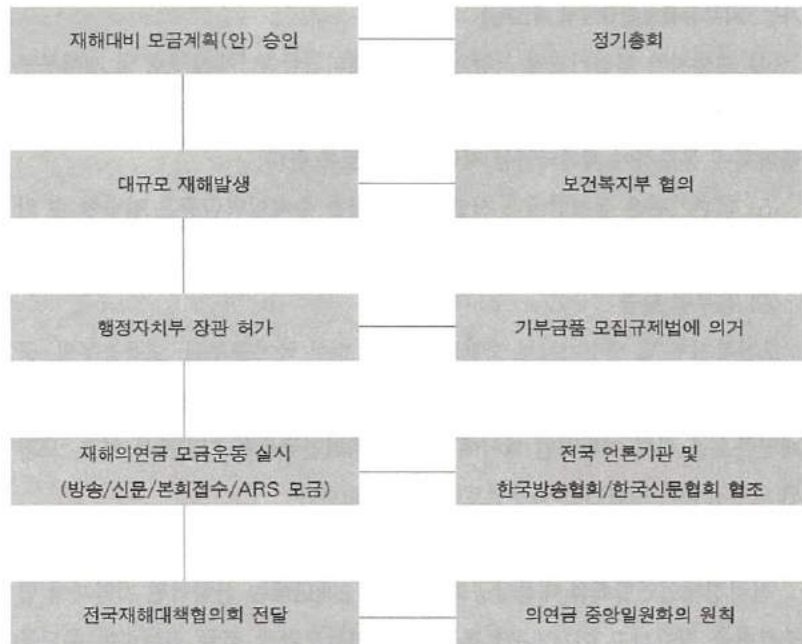
나.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토록 한다.

다. 모집된 의연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의연금품 모집·집행의 사업비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다.

라.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한다.

3. 재해 의연금 모금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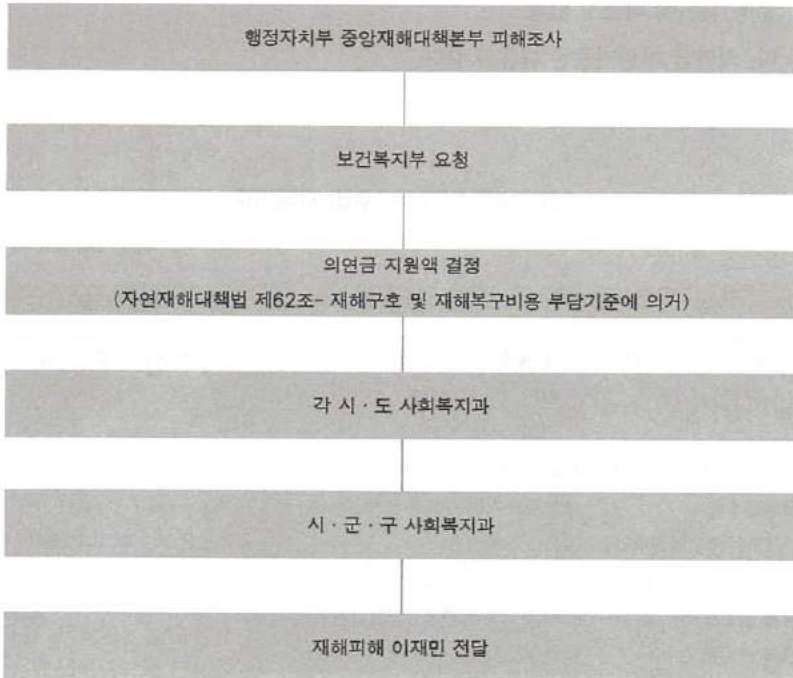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여 이재민들을 동포애로 보살피주고자 매년 초 재해에 대비하여 모금계획서를 확정하고 재해발생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모금을 실시하고 있음.

▷ 모금방법은 크게 기탁방식과 ARS 등을 통한 모금을 실시하고 있음.

- 기탁모금 방식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ARS모금은 한국통신 및 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번호로 전화를 하면 1일 일정액이 기탁자의 다음달 전화요금서에 청구되면 이 금액이 본회에 전달되어 이재민에게 쓰이는 방식임.

4. 재해의연금 지원 절차 및 기준



1) 지원 절차

가. 피해조사는 본회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인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집계를 근거로 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신고는 본회가 아닌 관할지역 재해대책본부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기준에 맞추어 지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 특별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 훈령 제81호 『의연금 관리·운용기준』에 의거한다. 의연금 지원은 모금을 실시하는 재해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재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음.

2) 지원기준

가. 의연금 지원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호에 의한『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및 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의연금 관리·운용기준』에 따르고 있음.

나. 의연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시행일 : 2002.05.28부터

구분	지원기준	지원부담비율
위로금(장의비 포함)	사망(실종)자 1인당 - 세대주: 1,000만원 - 세대원: 500만원	의연금 또는 국고 : 100%
가.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		
생계보조금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 상을 당함으로써 생계유 지가 곤란한 경우)	부상자는 사망 실종자의 50% 세대당 5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상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 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국고 : 50% 의연금 또는 국고 : 50%
나. 이재민 생계구호		
응급생계구호 (최초 7일간)	인/일 백미 432g(827원) 부식비 1,654원 (계 2,481원)	국고 : 70% 의연금 또는 국고 : 15%
장기생계구호	인/일 백미 288g(551원) 정맥 138g(89원) 부식비 1,654원 (계 2,294원)	국고 : 70% 의연금 또는 국고 : 15% 지방비 : 15%
다. 재해복구지원		
세입주자 보조비	300만원 범위 내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국고 : 80% 지방비 : 20%
침수주택수리비	○주택 및 주거시설을 겸한 건축물 내의 주거용방의 바닥이 침수된 경우 세대당 60만원	국고 : 100%



구분	지원기준	지원부담비율
라. 기타지원		
생계지원	30~50% 미만 피해세대	국고 : 70%
(5ha 미만 경작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이와 유사한 규모의 어망, 수산증·양식 시설 등 피해어가)	: 양곡 3가마(2ha 미만) 양곡 2가마(2ha 이상 3ha 미만)	의연금 또는 국고 : 30%
	50~80% 미만 피해세대	국고는 농림부,
	: 양곡 6가마(2ha 미만) 양곡 4가마(2ha 이상 3ha 미만) 양곡 2가마(3ha 이상 5ha 미만)	해양수산부 부담
	80%이상 피해세대	
	: 양곡 10가마(2ha 미만) 양곡 6가마(2ha 이상 3ha 미만) 양곡 4가마(3ha 이상 5ha 미만) 양곡(정부미 80kg)/157,040원	

5. 관련 법령

1)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9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2.31〉

제 2 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에서 관장한다.〈개정 '99.12.31〉

제 3 조(의연금품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 한다)은 매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② 의연금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의연금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제 4 조(의연금품의 사용)

의연금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99.12.31〉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및재해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개정 '96.8.3〉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용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초과보유 의연금품의 특별사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 및 수량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개정 '96.8.3〉〈개정 '99.12.31〉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유족에 대하여는 1인당 1,000만원,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는 500만원의 위



로금 [신설 '96.8.3]〈개정 '99.12.31〉

2. 재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는 300만원, 반파는 150만원, 침수(주택 및 영세상가)는 60만원의 주거비 보조

〈개정 '96.8.3〉〈개정 '99.12.31〉

3.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의 연료비

〈개정 '99.12.31〉

4. 이재민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당 30만원의 월동대책비

〈개정 '99.12.31〉

5. 이재민중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세대당 50만원의 명절 특별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로서 재해발생 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한다)

〈개정 '99.12.31〉

6. 재해지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신설 '99.12.31〉



제 6 조(의연금품의 수급관리)

의연금품은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 (보건복지부훈령 제5호, '95.2.27)의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협의회”로, “시·도지사”는 “협의회장”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의연금”으로 본다.〈신설 '99.12.31〉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1년 7월1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96. 1. 20〉

이 규정은 1996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99. 1. 20〉

이 규정은 1999년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 12. 31〉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V. 기획 특집: 구호활동

세계 경제 강대국 미국과 일본!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력을 가진 이 두 선진국 역시 해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돌풍, 화산폭발, 폭풍 등의 끊이지 않는 재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자연 재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재해 대책에 있어서 구호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기관인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일본의 민간재해구호연합회(NVOAD) 등은 최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원활하게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재해 대책 노력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도 본 기획 코너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세계적인 전문구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4월 말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에서 있었던 <재해구호 실무과정>에서 본 협의회 총무부 김재호 계장이 발표한 <구호물품 세트화 작업과 구호물품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함께 교육에 참석한 재해구호 실무 담당자들의 <구호물품 전달체계 및 구호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짧게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수 교수가 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전반적인 구호활동의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1. 재해구호물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전국재해대책협의회

1) 구호물품 지원현황 및 문제점

가. 구호물품 지원현황

(1) 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호물품의 대부분은 개별품목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물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2)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구호물품을 패키지화하여 보관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임.

(3) 재해대책협의회의 경우 구호물품 세트화(15,000세트) 및 의연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구호물품 세트화의 경우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이며, 의연물품은 재해발생 후 기탁되는 관계로 구호물품으로 부적합한 물건(예: 겨울의류,

벨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재해지역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임.

〈구호물품 보관창고 및 보유현황은 김승권, 「재해구호물품창고 운영평가 및 적정설치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5-109 참조〉

나. 구호물품 지원의 문제점

(1)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호물품의 충분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급조절이 불가능함.

(2) 특히 대다수의 창고가 협소하여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우천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음.

(3) 구호기관의 전문화된 보관창고가 없으며 일원화된 구호물품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호물품의 수급을 통제하고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해구호물품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재해구호물품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으로 나누어 구호물품 광역창고의 건립을 추진함.

〈이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해가 수해인 점에 기인하여 3대강을 중심으로 권역을 분할한 것임.〉

2) 재해구호물품의 효율화 방안

가. 기본방향

구호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1) 구호물품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조직화
- (2) 광역창고 설립 및 운영
- (3) 구호물품 관리의 전문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한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재해구호물품의 적정량을 상시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이재



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구호물품 전달체계의 일원화

(1) 구호물품의 접수 및 모집, 물품분류, 수송체계, 현지배분 등이 일원화된 체계로 처리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관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2) 재해발생시에 대비하여 구호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 중앙지원 대상 이외의 소규모 재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구호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3) 긴급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4) 구호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기에 이재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충분한 구호물품을 확보하여야 함.

광역창고 건립 전까지 이천창고(600평) 임대운영

남부권을 관할하는 함양구호물품 창고의 건립(2002년)

중부권을 관할하는 파주구호물품 창고의 건립(2003년)

다. 광역창고의 설치 운영방안

(1) 광역창고 건립 후 기대효과

(가) 현재 대부분의 구호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구호물품 관리가 허술한 현실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재해구호담당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창고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0%(보통이 25%)에 이르고 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은 25%에 그치고 있음.

근거 : 김승권 「재해구호물품창고 운영평가 및 적정설치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12

(나) 현재 구호기관(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유중인 구호물품의 경우 균형적이지 못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변질의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광역창고는 구호물품의 적정성 확보와 불용



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운송, 포장, 보관 등의 전문적인 관리로 구호물품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재해구호담당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재해구호물품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 시·도가 63%에 이르고 있으며, 수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시·도가 31%에 이르는 현실에서 광역창고를 통해 물품을 지원할 경우 구호물품의 사장화를 막을 수 있음.

근거 : 김승권, 「재해구호물품창고 운영평가 및 적정설치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19

(2) 함양구호물품 창고 건립

(가) 일반 현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1번지 외 7,800여평 부지에 건평 1,500평 규모의 구호물품 보관창고 건립

▷ 구호물품 중계기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700평 규모의 야적장 설치

(나) 건립 추진현황

▷ 현재 : 부지확보 및 토목공사 진행중

▷ 6월 : 토목공사 완료 및 건축설계

▷ 9월 : 건축공사 실시(건축비 23억원 확보)

▷ 10월 : 구호물품 창고 완공 및 운영



라. 파주구호물품 창고 건립

(1) 일반 현황

(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일대 부지 10,000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건평 2,300평 규모의 구호물품 보관창고를 2003년까지 건립할 계획임.

(나) 파주구호물품 창고는 중부권을 관할하는 광역창고의 위상과 함께 각 광역창고의 중앙창고 역할을 수행할계획임.

(다) 파주구호물품 창고 건립 전까지는 임시로 이천의 조달청물류창고(600평 규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건립 추진현황

(가) 현재 : 토목 및 건축설계 진행중



- (나) 2002.12 : 제반인허가 완료
- (다) 2003. 2 : 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창고건립
- (라) 2003. 7 : 구호물품 창고 완공 및 운영

마. 구호물품 관리의 전문화

(1) 전문화된 시설에서 구호물품 보관

(가) 현재 대부분 구호기관의 구호물품 보관장소가 협소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는 관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구호물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호물품 창고가 청사 구석이나 공설운동장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습기 및 항온시설 등이 거의 없는 실정임.

(나) 전국적으로는 거의 매년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장기간 구호물품이 방치되어 변질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다) 광역창고의 경우 우천시에도 창고내에 운반차량이 직접 진입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및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음.

(라) 광역창고는 구호물품의 적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및 구호물품의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불용재고를 줄일 수 있으며, 보관뿐만 아니라 운송 등의 관리도 체계적인 구축이 가능함.

(2)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가) 현재 대부분 구호기관의 재해구호 인력이 재해구호업무만을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병합하여 수행하는 관계로하절기 재해기간 이외에는 재해구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광역창고의 경우는 전문인력에 의해 구호물품을 전산화하여관리, 운영함으로써 구호물품 관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음.

(다) 구호물품을 전산화하여 품목별 분류뿐만 아니라 계절적 분류 및 유통기한별 분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토록 함.

3) 구호물품 세트화 방안

구호물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필요물품을 선정, 구호물품을 세트화하여 운영

- ◇ 초기필요 구호품목의 합리적 선정
- ◇ 세트화물품 지급기준의 설정
- ◇ 세트화물품 운영?관리의 합리화

가. 기본방향

이재민구호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사전에 세트화하여 제작 보관함으로써 이
재민구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나. 구호물품 세트화의 필요성

(1) 재해발생시 응급구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초기 필요물품을 선
정하여 사전에 종류별로 세트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균등
한 지원이 가능.

(2) 구호물품이 규격화됨으로 해서 구호물품 전달시 일손을 줄일 수 있으
며, 균등분배에 따른 민원 및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함.

(3) 이는 이미 기존에 재해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활용해본 결과 효율이 무척
높음을 확인하였음.

(1999년, 2000년, 2001년 경기도 및 재협에서 구호물품 세트화 실시)

(4) 이는 그동안 재해구호활동에 임하면서 구호물품의 세트화의 필요성에
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재해구호담당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구호물품을
세트화하고 있는 시·도가 31%에 그치고 있으며, 본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2개 시·도 이외에는 거의 구호물품의 세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근거 : 김승권, 「재해구호물품창고 운영평가 및 적정설치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18

(5)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각 시·도에 구호물품 세트화 지

침을 권고사항으로 시달하였으며, 입법 예고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및 보건 복지부 2002년 재해구호 사업지침에 구호물품 세트화를 명문화함.

다. 구호물품 세트화 제작

(1) 보건복지부 2002년 재해구호 사업지침 및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구호 물품을 3종(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개별지원품목)으로 구분하여 최근 10년간의 재해상황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전에 제작토록 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지원품목이 아닌 물품은 3종 개별지원물품(기저귀, 생수 등)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

(2) 응급구호세트 : 재해발생초기 이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통 물품만을 세트화 한 것으로 2인 가구(남·녀 각1인)를 기준으로 제작함.

종류	구분	품명	단위	수량	
응급 구호 세트	의류	채육복(남)	벌(점)	1(2)	
		채육복(여)	벌	1(2)	
		팬티(남)	매	1	
		런닝(남)	매	1	
		팬티(여)	매	1	
			런닝(여)	매	1
	침구류		이불	매	1
			수건	매	2
	생필품		치약	점	1
			칫솔	점	2
			화장지	롤	2
			면도기	점	1
			생리대	조(점)	1(2)
세제류	세면비누	점	2		

재해발생 즉시 재해지역에 전달하여 배분토록 함.

※ 세트화 구호물품의 품목선정은 재해지역 이재민의 여론청취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재해구호기관의 실무자들이 수차례 회의 및 2001년 국립보건원 재해구호실무과정 참가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확정하였음.

(3) 재가구호세트 : 수용이재민이 긴급구호 후 귀가하거나 이웃집 등에 거





처하는 이재민에게 지원할 구호물품을 세트화 한 것으로 4인(1가구) 기준으로 제작한 것으로 식기세트나 취사세트 등이 주 구성임.

종류	구분	품명	단위	수량
재가 구호 세트	버너	버너	대	1
		생필품	수세미	매
	세제류	고무장갑	켄레	2
		세탁비누	점	2
		주방세제	통	2
	식기류	삼푸	통	1
		코펠	세트	1
		수저	벌(점)	4(8)

4) 구호물품 위탁관리 방안

가. 기본방향

(1) 구호물품의 전문화된 관리

광역창고의 적정설치에 따른 구호물품의 효율화를 기함과 함께 재해구호 전문기관의 광역창고에서 구호물품을 보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 구호물품의 전문화된 관리로 효율성 증대
- ◇ 구호물품 제작비용의 절감
- ◇ 이재민의 만족도 극대화
- ◇ 재해구호 업무의 전문화 증대

(가) 구호물품의 관리, 운영의 최적화 조건은 생산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나) 이를 위해 광역창고의 운영을 통해 물자를 규격화, 통일화하고 재고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합리적임.

(다) 광역창고의 경우 항온, 항습 시설이 갖추어진 전문화된 창고로 구호물품이 계속 순환되어 구호물품 품질의 향상과 함께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함.

(2) 구호물품 제작비용 절감

(가) 창고를 일원화하여 구호물품을 대량제작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인력 운용에서도 합리적임.

(나) 전문기관에서 구호물품을 세트화 제작을 수행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동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재해구호전문 광역창고를 이용함으로써 인한 보관료

절감, 대량구매를 통한 제작비 절감 등 시·도 자체 제작 및 보관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기탁되는 의연물품으로 세트화 물품의 10%이상을 충당토록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제작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라) 광역창고의 경우 구호물품이 계속 순환되므로 보관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항상 신제품으로 양질의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음.

(3) 이재민 만족도 극대화

(가) 광역창고를 통한 구호물품을 관리, 운영할 경우 지속적인 순환이 가능하여 항상 적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이재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나) 광역창고를 통해 적절한 수량을 보관함으로써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이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운송 및 조직체계의 마련.

(다) 구호물품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일선 공무원 및 구호요원은 적절한 업무분담 및 이재민 구호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효율적임.

※ 재해구호담당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창고를 폐지한 이후 시·도 및 광역창고를 설치하여 전문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의 창고)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5%가 찬성을 하고 있음(19%만이 반대)

근거 : 김승권, 「재해구호물품창고 운영평가 및 적정설치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147

나. 법률적 검토

법률적 검토 결과 재해예방 및 이재민구호를 위한 구호물품의 확보는 국가의 기본의무이며, 이를 위한 민간 재해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호물품 위탁계약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며 광역창고 건립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

(1) 재해의 예방과 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활동은 국가의 기본임무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헌법 제34조(사회보장)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구호기관은 재해발생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고 응급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상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호물품 구입 및 조작, 운송비를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민간 재해구호관련 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9조(재해구호관련기관과의 협조)

구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협회(본회의회)등 민간구호관련단체에 재해구호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 재해구호관련 단체에서 협조요청 업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0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 운영비
- 4. 재해구호물자의 조작 및 운송경비

(4)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재해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구호물품을 비축하여야 하며, 구호물품 창고가 협소할 경우는 시·군·구나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의 재해구호물자 창고를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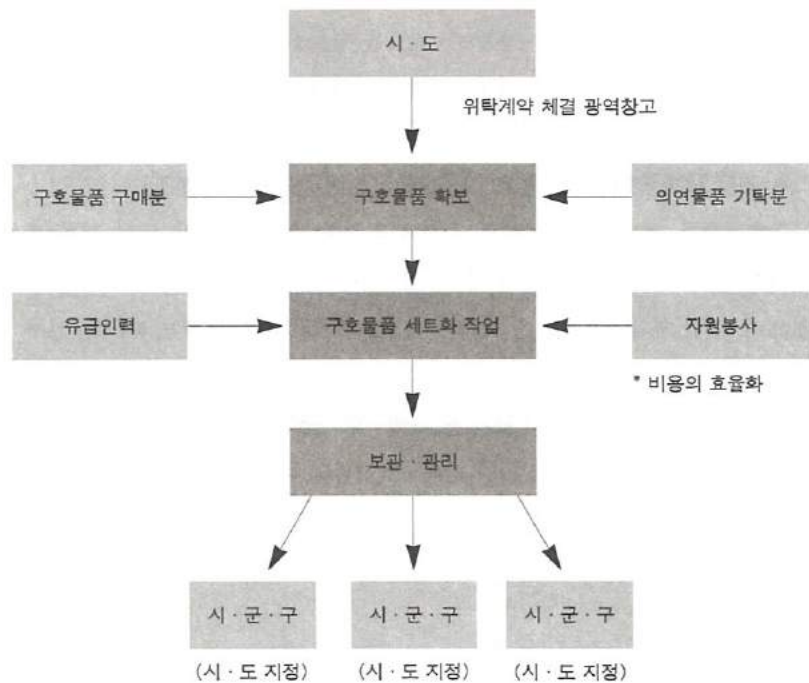
※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0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최근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관할지역 내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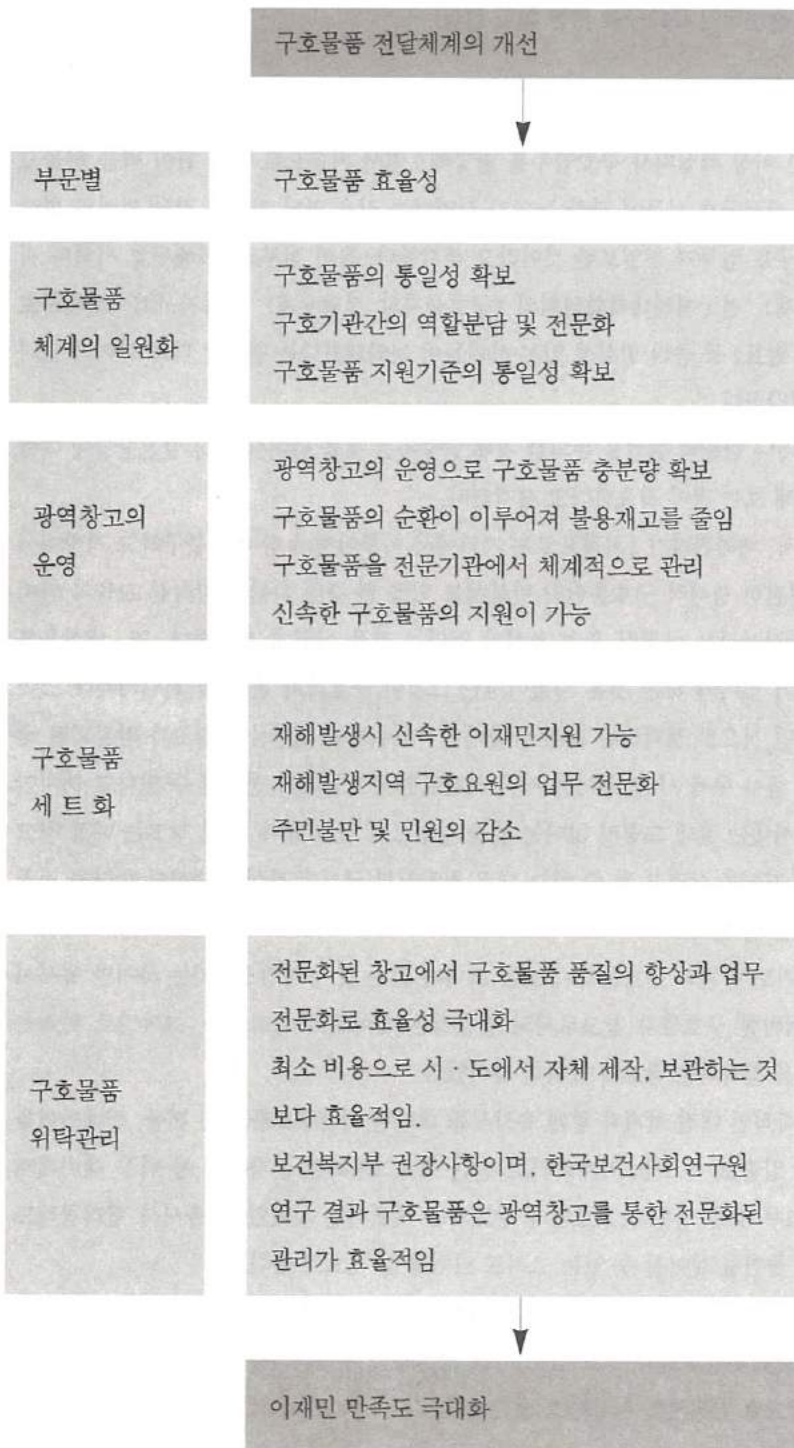
② 시·도지사는 시·도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사용하거나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 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구호물품 위탁관리 구성도



5) 결 론



2. 실무자들이 말한다!

1) 전문적인 재해구호 물류 창고 절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4급진교성

5년 이상 적십자사 구조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처음으로 민과 관이 벽을 허물고 함께 재해구호 실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만남 자체가 갖는 의미와 함께 재해구호 업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재해구호 시책과 지휘체계>,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구조물자의 전달체계>, 적십자사의 <재해구호 사례 발표> 등 좀더 현실성 있는 사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현실을 논의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 좀더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재해관리가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구조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 중앙 차원의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또 대형물류 창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조물자 관리 및 전달체계에 있어 만능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서너 개의 대형물류 창고가 건설되면 국토가 좁아 두세 시간, 길어야 서너 시간이면 구조물자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해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형 창고는 대형 창고대로 기능을 살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취약지역 근처에 분산 비축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경기도 이천의 구조물자 창고는 그나마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구조물자 창고로서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야말로 아직은 물건을 집적하는 창고에 불과한 것이었다.

과학적인 내진 설계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역학구조를 가진 건물, 컨베이어를 통한 입출고 시스템, 기계화되고 전산 프로그램화된 물자관리 등 비상 대비체계를 고루 갖춘 일본의 구조물자 창고와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유사시 헬리콥터도 와서 물건을 실어갈 수 있는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구조활동의 발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재해구호관련 기관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상호 협조 아래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해구호 물류 창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품 창고는 임시적으로 물품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창고임.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현재 경기도 파주와 경상남도 함양에 광역 물품 창고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편집자

2) 물질적 구호를 넘어선 심리적 구호활동까지!

울주군청 복지위생과

이혜경

인간의 생명과 삶의 터전은 홍수, 지진, 해일, 태풍 등 각종 자연적 재해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재난관리법이 입법·시행되면서 법적으로 두 가지 용어에 대한 구분을 위해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결과를 재난(man-made disaster),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을 재해(natural disaster)로 구분하고 있다. 재해구호는 이런 자연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관이 처음으로 함께한 재해구호 실무자 교육에서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의 <구호물품 세트화 및 구호물품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현실성 있는 사안으로 재해발생시 일원화되지 못한 구호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의 이천창고 견학은 구호물품 관리의 전문화 및 구호물품 세트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재해구호 활동의 문제점은 늘 공통된다. 평상시 재해대비 구호물품 비축 및 장소확보 미비, 구호활동 전담 공무원의 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체계적 지식 확보 결여, 민간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미흡 등이 그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그 해결점이 있는 것 같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한건의 재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구호 체계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일원화된 구호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호 업무를 단지 이재민들에게 생필품, 지원금 등의 물질적인 구호만

이 아니라 재해 그 이후에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있도록 심리적 측면까지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본다.

3) 신속한 관계기관의 협조 필요!

제주도 사회복지과

이영철



예측하기 힘든 자연 재해이기에 사후 피해 대책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재해에 대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번 민·관이 함께한 재해구호 실무자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사안 중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의 <구호물품 세트화 작업과 구호물품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현실성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된 “광역창고의 운영” 구호물품 지원 전문기관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전국을 권역 별로 구분, 창고를 마련하고 각 시·도의 구호물품을 위탁관리 및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전국 몇 개 시·도 지역은 광역 창고를 마련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물품 창고의 시설, 전담관리인력 충원, 구호물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 배분하기에는 적정요건을 못 갖춘 상태인 점을 감안 할 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실무자들이 함께한 자리인 만큼, 재해 구호 활동시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사례를 들으면서 재해구호 성금 접수와 배분, 재해구호 물자의 비축 및 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유관기관의 상호 협조 아래 재해구호물자의 신속한 전달 등 재해구호 전반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가 활발할 때 좀더 발전적인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재해관리체제 개선방안

1) 재해관리의 방식 및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통합관리체제 구축〉

김영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해극복을 위한 기술이 발달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커진 현대에도 자연의 위력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각종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부작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발달을 경계하는 논의도 있었고, 새로이 발달된 기술을 이용한 대응방법의 개발과 관리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 산업과 기술의 발달 등은 각종 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해관리는 주로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에 인위적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 인위적 재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법제가 개편되고 기구가 세분화되는 등의 재해관리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에 상응한 권한의 증가 등 재해관리행정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적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한 재해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활동은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차원의 구호 및 복구지원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재해관리를 위한 행정조직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완화 또는 억제하려는 여러 활동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관리에 있어서 중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의 토대하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별 재해특성을 파악하여 그 발생빈도와 형태를 고려한 적절한 재해관리를 하여야 하



며, 재해발생 이후의 복구, 응급조치 등의 소극적인 재해대책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재해관리체제에서 통합적 재해관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재해관리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하며,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적극적인 재해관리정책 및 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증가와 인구집중에 의한 대도시 교통문제, 식량문제,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온실효과에 의한 기상이변에 따른 생태계의 위협, 인위적인 돌발사고의 빈번한 발생 및 국지적인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잠재적인 재해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며 수해, 풍해, 해일, 설해, 한해, 지진, 화재, 폭발사고 등 재해에 대비하고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극복하고 수습하는 제반 활동을 재해관리라고 한다. 즉, 재해관리란 각종의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재해는 존재하게 마련이지만 재해관리의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이러한 재해의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이 좀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복구활동 등에 투자되는 재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배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해관리는 장기적인 국토개발과 치수사업과 연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복지차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재해관리의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재해관리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완화단계, 준비계획단계, 응급대응단계, 복구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네 과정은 상호 독립적이거나보다는 각 단계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재해관리의 방식은 크게 보면 재해유형별 분산적 관리방식과 통합적 관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재해유형별 분산적 관리방식이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재해를 유형화하고 재해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재해를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고 통합적 관리방식이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전체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재해관리주체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방식을 말한다. 재해관리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것은 재해관리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통합성·종합성을 가지며, 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재해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고 재해의 발생원인과 대비책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재해의 외면적 규모와 감정적 책임 논쟁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은 각종의 재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대응과 관리의 전략은 크게 보면 예방 전략과 복원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해관리체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람직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노력과 재해의 발생가능성을 극소화하는 데 필요한 대비책 및 보완책의 강구를 기본으로 하는 예방관리전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에 대한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단계별 관리의 현황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완화 및 준비계획단계의 경우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근거하여 1년 단위로 하는 시·도에서 수행할 수방자재·장비 등 재해예방, 주민대피·구조·구난 등 재해응급대책, 복구비지원 등의 항구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도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의 경우 시·도 지역 방재계획에 따라 시·군·구에서 수행할 재해예방, 응급 및 복구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구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의 신속한 확보와 재해 사전대비·점검 결과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 등의 정기 정비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첫째, 재해 위험지 해소 및 상황대처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2개소), 재해대책기금운용,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둘째, 재해 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중점대상시설 3,096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셋째, 재해위험시설물관리를 위하여 100개소(D급 89, E급 11)를 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중점대상시설 3,096개소를 분기당 1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넷째, 위험시설물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바, 부산대교 등 16개소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교량실명제 추진, 교량보수를 추진



하고 있다. 다섯째,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취약대상관리, 소방장비보강, 소방시설 확충, 119구급봉사활동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응단계에서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제의 운영,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요령의 숙지, 비상의료지원, 비상상황실의 운영, 이재민 수용과 보호, 긴급피난지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복구의 용이를 위한 재해의 직전, 도중, 직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재해발생시에 재해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재해유형에 따라 편성인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재해종합상황실은 재해상황 총괄관리, 유관기관 보고·전파 대책 협의·조정, 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반, 재해원인조사·분석, 초동대처 및 수습·복구지원·협조를 위하여 수습·복구반, 여론동향 파악 및 대외홍보진담, 유관기관 지원상황 파악 및 협조 요청, 이재민·사상자 등 관리를 위하여 홍보·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재해발생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총괄반, 행정지원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수습 복구반, 교통 통제반, 조사반, 홍보반, 기타반(필요시) 등 9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해현장에서의 응급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지원반, 구조지원반, 복구지원반, 확인조사 및 홍보지원반으로 구성되는 현장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셋째, 재해현장지휘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구조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논의한 현장상황반 외에 총괄반, 인력 관리반, 장비반, 통신반, 기술지원반, 응급의료지원반, 보도지원반, 자원봉사관리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관할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소와 사고대책본부의 지원하에 분류반, 응급 처치반, 이송반으로 나누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고 및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복구단계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자와 재해에 대한 단기적·임시적 응급복구와 장기적·항구적 원상복구 또는 개량 복구를 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응급복구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통신, 상수도, 전기시설의 복구에 우선권을 두며, 항구복구는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의 재해 현황과 재해단계별 재해관리의 현황을 토대로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해관리 행정 체계적 측면, 재해관리과정적 측면, 재해관리 능력적 측면, 재해관리 지원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재해관리 행정 체계적 측면에서 첫째, 재해관리 조직구조의 분산구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업무 및 조직구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국단위 수준이 아니고 과단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바, 즉 소방본부, 건설 주택국의 건설 방재과, 행정관리국의 체육민방위과로 분산된 조직구조체제를 갖추고 있어, 재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둘째, 재해관리기구의 권한이 미흡하다. 재해관리조직이 분산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단위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과단위 수준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재해관리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 차원에서 재해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행사시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권한이 미흡하다.



셋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체제가 미흡하다. 재해관리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일정한 권한과 책임하에서 추진되고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조정 그리고 보완의 관점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직구조에서만 아니라 행정운영상 상호 연계하에서 재해관리를 하는 데 미흡한 조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재해관리기구가 비상설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재해관리기관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조직의 특성상 가외성의 논리에 따라 상당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재해관리와 관련된 기구 중 상설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급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재해의 예방부터 복구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지식의 보강 등 제도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재해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재해는 크게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해로 나눌 수 있고 재해관리는 여타의 다른 행정업무에 상호연계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복잡한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인력을 제외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해관리 과정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복구 중심적 재해관리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해관리의 전 과정 중에서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재해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둘째, 재해정보의 부족과 정보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해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때만이 예방과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 등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재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재해관리정책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제반정보가 부족하고 이 부족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재해관리의 각 과정이 연계작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해관리 능력적 측면에서 보면 방재관련계획 및 교육훈련의 불충분, 재해관리담당자의 부족으로 인한 재해관리시설물 관리 미흡, 재해관리에 관한 연구기능 부재, 재해관리의 전산화 미흡, 인적·물적 동원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재해관리의 지원적 측면에서는 언론기관의 재해관리 지원 미흡, 지방의회의 지원 미흡, 교육 및 의료기관의 노력 및 장비의 부족, 지역주민의 방재 대응능력 결여 및 민간지원단체의 재해구호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통합관리체제의 구축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해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해통합관리를 위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 재해의 통합관리, 재해관리전담기구의 독립·상설화, 예방위주의 재해관리, 재해관리에 대한 가외성 허용범위 확대라는 기본 방향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각종 재해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의 모색과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재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수요에 적합한 연계체제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방재전담기구의 독립·전문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재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관리국의 체육 민방위과, 건설 주택국의 건설 방





재과 그리고 화재진압을 총괄하는 소방본부(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등을 중심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분산관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해관련기구의 통합·일원화가 요청되는 바, 재해관리업무가 여러 국에 분산되어 있고 중요한 재해에 해당하는 화재관련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재해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 집행업무 등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재해관리국을 설치하고 예방관리과, 상황관리과, 지원 복구과, 동원교육과, 민방위과, 소방관리과 등 6개 과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방재기획, 상황관리, 지원복구, 동원, 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해관리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면 소방 본부를 부산광역시 소방방재본부로 하여 예방관리과, 상황관리과, 지원복구과, 동원교육과, 민방위과, 소방관리과 등을 두도록 하여 소방업무를 중심으로 각종 재해를 통합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재해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와 더불어 방재행동대의 조직이 필요하다. 방재행동대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부반, 경계·복구반, 의료·구호반을 설치한다. 방재행동대는 동단위로 편성운영하며 본부반은 대원의 10%, 의료·구호반은 15~20% 내외로 편성하고 잔여대원은 경계·복구반에 편성한다.

둘째, 재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해관리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러한 재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1)재해대책 기본조례의 제정: 재해대책 기본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대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재계획, 재해예방과 그 실시책임에 관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그 실시책임 등의 재해응급대책, 재해가 발생한 후의 재해복구, 재해예방·응급대응·복구사업수행을 위한 재정금융조치, 재해긴급사태시 보도체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

(2)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비행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에 따라 재해관련사업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에 따라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라는 인식하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경시되었는 바, 재해대비행정의 재정에 관해서는 사고발생 후 복구에 필요한 인원뿐만 아니라, 방재물자의 비축, 시설의 확충, 재해관리에 필요한 인

력수급에 따른 경비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해관리과정 중에서 복구용 경비는 예비비 등 임시경비로 충당하고 예방용 경비는 경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3)재해관리기술능력의 향상: 여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해를 관리하는 전문적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재해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구조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재해종합상황관리의 극대화, 예방안전 점검체계의 보강, 재해관리의 전산화, 정보체계의 확립, 구조·복구업무의 전문화 및 조직보강, 건설사업 관리제도의 도입, 재해위험시설 지정·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지하철 안전관리,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전기 및 방사능 시설의 안전관리, 대형건설공사장 안전관리의 생활화, 화재예방의 과학화, 위험시설물의 안전대책, 사고현장의 효율적 관리, 해양사고의 효율적 관리, 풍수해에 강한 도시건설, 최적 홍수 통제능력 제고, 가뭄 및 지진 통제체제 확립과 내진설계 기준 확대, 국지성 예보 체계확립, 자연재해 저감기술개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자원봉사자 활용 및 민간참여체계 확립,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재해영향평가제 정착, 재해 설계·감리보험제도 도입, 방재심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도시위기관리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방재행동대의 조직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 도시위기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주민자율신고 체계의 확립, 화생방방호태세 확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정립, 예·경보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구조·구난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신고체계 및 유관기관 수습체계의 확립, 구조·구난 능력의 강화, 응급의료체계 확립, 복구·수습대책의 신속화, 소방력 보강 및 소방전술 능력의 배양, 소방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4) 지역주민과 민간지원의 강화: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과 복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지역주민의 복구의지에 상응한 지원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재해관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참여가 되어야 하며 재해에 대한 민간지원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의 활동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구호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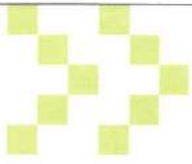
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해구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해구호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재해구호본부, 시·군·구 재해구호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의 경우 재해구호기본계획과 시·군·구 재해구호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재해구호사업에 의한 지원은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지원(위로금, 생계보조금), 이재민 생계구호지원(응급생계구호, 장기생계구호), 재해복구지원(세입주자보조비, 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해구호물자 관리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재해발생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이 기탁한 재해구호물자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여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물자를 비축시에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여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하여 보관토록 하여 재해의연품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구호물품의 접수 및 모집, 물품분류, 수송체계, 현지배분 등이 일원화된 체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관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구호물품의 전문화된 관리, 구호물품 제작비용 절감, 구호물품 창고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이재민 만족도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구호물품을 전문민간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경우 그 모금에 있어서 주로 언론매체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자체적 모금활동을 좀더 확대하여야 한다.

재해에 대한 민간지원단체가 물질적인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재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방안을 강구·제시하는 발전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취로사업 지원을 비롯한 직업전도사업, 소득증대사업, 학자금구호사업과 주택복구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별 재해지원단체가 설립(또는 전국 규모의 재해지원단체의 지사 설립)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권한과 책임의 일치화란 관점에서 조직구조체계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관리 기술능력의 향상 그리고 재해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강화, 현지에서 재해에 대한 일차적 대응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민간재해지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Ⅵ. 이제까지의 구호실적

1. 1997년

1) 1997 재해피해상황(중앙재해대책본부)

가. 피해일시: 1997년 1월1일 ~12월31일

나. 피해원인: 집중호우 및 태풍

다. 피해내용

1) 인명피해

사망·실종: 43명

부상: 5명

2) 이재민 458세대/ 1,352명

3) 침수

건물: 11,360동

농경지(기타): 23,684ha

4) 재산피해: 164,465백만원

○ 건물: 507동

전파: 111동

반파: 396동

○ 선박: 86척

○ 농경지: 2,418 ha

○ 공공시설

도로·교량: 610개소

하천: 710개소

소하천: 1,222개소

어항: 26개소

수리시설: 1,121개소

소규모시설: 2,307개소

사방(임도): 120개소

수도: 96개소

수산증양식: 119개소

철도: 14개소

축대·담장: 27개소

○ 개인 시설

비닐하우스: 87.6ha



라. 시·도별 피해액(단위: 억원)

시·도	재산	인명(명)
서울	451	1
부산	184	8
대구	13	
인천	3,777	3
광주	2,945	
대전	10,924	4
울산	380	1
경기	6,613	6
강원	5,739	2
충북	39,992	8
충남	27,891	2
전북	8,706	
전남	23,116	4
경북	8,752	2
경남	20,786	4
제주	4,197	13
계	164,465	48

1997년에는 의연금품 모집하지 않았음. 편집자

2) 1997년 재해 의연금 지원

가. 일자별 지원 현황

지원일자	지원금액	피해내역	(단위: 원)
97. 2.17	260,029,000	97.1.1-8일 폭풍설피해 구호비	
8.11	174,909,000	97.6.25~7.17일 호우피해 구호비	
9. 9	192,000,000	97.6.25~7.17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9. 9	5,205,998,000	97.8.3~5일 호우피해 구호비	
9. 9	21,942,000	97.8.7~9일 태풍피해 구호비	
10. 1	622,890,000	97.8.19~21일 해수범람피해 구호비	
17	84,962,000	97.9.15~17일 태풍 '올리와' 피해 구호비	
12.26	23,460,000	97.5~6월 호우 및 우박피해 구호비	
12.26	52,000	97.9.26일 우박피해 구호비	
12.26	680,000	97.10.13 우박 및 8~9월 가뭄피해 구호비	
12.26	2,430,000	97.11.12일 돌풍피해 구호비	
12.26	171,818,000	97.11.25~26일 폭풍우피해 구호비	
12.26	950,000	기타(구호품 운송비)	
계	6,762,120,000		

나.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도	사망 실종자 위로금	응급 구호비	장기 구호비	생계 보조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세입주 보조비	기타	계
서울	2,500		3,697		117,600	11,000	3,000		137,797
부산	55,000		61,761		59,250				176,011
인천	20,000		2,296		3,534,750	8,000			3,566,046
광주			357		370,950	10,000			381,307
대전	25,000		83		84,900	5,000			114,983
울산	5,000		514						5,514
경기	30,000		11,194		602,400	8,000			651,594
강원	12,500	1,621	1,040		24,150	161,300			200,611
충북	42,500		2,112		147,000	64,000	1,500		257,112
충남	10,000	20	12,084		258,450	65,800			346,354
전북			4,158		249,450	61,800			315,408
전남	17,500		31,392	2,995	138,150	70,000			260,037
경북	10,000	1,106	33,674	2,000	3,900	111,300			161,980
경남	30,000		4,366		32,100	5,000			71,466
제주	30,000				85,950				115,950
본회								950	950
계	290,000	2,747	168,728	4,995	5,709,000	581,200	4,500	950	6,762,120

2. 1998년

1) 1998 재해피해상황(중앙재해대책본부)

가. 피해일시: 1998년 1월1일 ~ 12월31일

나. 피해원인: 집중호우 및 태풍

다. 피해내용:

1) 인명피해

사망·실종: 386명(균 인명피해 15명 별도)

2) 이재민: 60,935세대/ 184,809명

3) 침수

건물: 90,490동

농경지(기타): 151,256ha

4) 재산피해: 1,523,716백만원

○ 건물: 11,372동 41,525백만원

전파: 1,413동

반파: 9,959동

○ 선박: 114척 (680백만원)

○ 농경지: 9,080 ha (115,868백만원)

○ 공공 시설: 1,038,076백만원

도로·교량: 2,365개소 (192,141백만원)

하천: 3,361개소 (288,699백만원)

소하천: 4,638개소 (193,809백만원)

어항: 28개소 (1,159백만원)

수리 시설: 3,788(79)개소 (118,488백만원)

소규모 시설: 7,152개소 (128,661백만원)

사방(임도): 1,175(38)개소 (78,211백만원)

수도: 657개소 (17,778백만원)

수산증양식: 105,900개소 (12,164백만원)

철도: 4개소 (29백만원)

축사 외: 319개소

○ 개인 시설: 327,567백만원

비닐하우스: 639ha (36,164백만원)

기타: 5식 (291,40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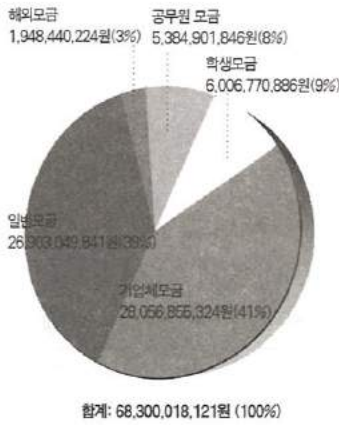
라. 시·도별 피해액 (단위: 억원)

시·도	재산	인명(명)
서울	24	51,392
부산	2	435
대구	8	8,111
인천	7	27,409
광주	1	917
대전		9,110
울산	1	4,874
경기	169	460,801
강원	2	64,096
충북	2	145,882
충남	12	93,181
전북	7	21,248
전남	29	73,791
경북	50	420,633
경남	70	141,044
제주	2	792
계	386	1,523,716

2) 재해 의연금 모금

가. 전체 모금

나. 구분별 모금



사별	사별 구분	모금액	비고	(단위: 원)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20,807,805,466		
	문화방송	11,396,388,793		
	서울방송	3,878,197,845		
	불교방송 외	707,781,153		
	방협지역회원사	829,370,794		
	방협비회원사	687,734,260		
	이자수입	5,113,366		
	소계	38,312,391,677		
신문사	경향신문사	132,844,446	ARS모금분 포함	8,720,501,188원
	국민일보사	940,603,799	KBS	3,366,357,213원
	동아일보사	1,699,193,019	MBC	2,671,741,942원
	문화일보사	107,143,926	SBS	2,480,738,153원
	서울신문사	387,625,331	PSB	145,074,560원
	세계일보사	68,349,070	ITV	55,511,000원
	조선일보사	6,070,886,889	강원일보	399,120원
	중앙일보사	1,225,123,666	매일신문	679,200원
	한겨레신문사	208,890,014		
	한국일보사	2,645,233,077		
	매일경제신문사	1,132,932,173		
	내외경제신문사	56,860,941		
	한국경제신문사	865,888,792		
	전자신문사	16,826,893		
	신협지방회원사	8,999,916,409		
	신협비회원사	651,857,245		
	외화 및 이자	7,382,068		
		소계	25,217,557,758	
	본회접수분	4,770,068,686		
	합계	68,300,018,121		

3) 재해 의연금 지원

가. 일자별 지원 현황

지원일자	지원금액	피해내역	(단위: 원)
98. 2.12	711,000	98.1.8~9 폭풍설피해 구호비	
2.20	33,251,000	98.1.14~16 폭풍설피해 구호비	
6. 8	12,038,000	98.4.17~18 우박피해 구호비	
7.27	102,313,000	98.6.23~7.3 폭풍우피해 구호비	
8.11	49,144,000	98.7.10~11 호우피해 구호비	
8.17	10,858,470,000	98.7.31~8.12 호우피해 우선구호비	
8.25	74,857,000	98.7.25~27 호우피해 구호비	
9.23	1,996,422,000	98.7.31~8.18 호우피해 추가구호비	
9.23	39,158,300,000	98.7.31~8.18 호우피해 추식질위로금	
9.29	4,265,000	98.5.8~12 호우피해(보리) 구호비	
9.29	477,900,000	경기 영세상인 추식질위로금(추가분)	
10.15	1,644,791,000	98.9.29~10.1 태풍 "예니" 우선구호비	
11. 9	13,821,000	98.7.31~8.18 호우피해 추가구호비	
11. 9	6,696,919,000	9.29~10.1 태풍 "예니" 피해 구호비	
11. 9	5,912,900,000	태풍 "예니" 피해 특별위로금	
11.23	20,503,000	98.8~9월 호우 및 우박피해 구호비	
계	67,465,813,424	긴급물자 구입비 및 운송비 외	

나.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도	사망 실종자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생계 보조비	세입자 보조비	이재민 특별위로금	기타	계
서울	180,000	749,649		173,000			16,012,200		17,114,849
부산	185,000	3,507		3,000			28,000		219,507
인천	100,000	24,938		64,000			1,006,000		1,194,938
대구	60,000	8,831	119,250	11,000		1,500	145,300		345,881
대전				22,000			18,400		40,400
광주	20,000	365	3,600	26,000			37,500		87,465
울산	25,000	2,489	900	4,000	279		4,600		37,268
경기	1,920,000	256,169	1,800	1,884,000		1,582,500	18,085,600		23,730,069
강원	30,000	6,714	7,350	101,000		6,000	77,000		228,064
충북	35,000	36,355	1,950	815,000	2,500	16,500	667,000		1,574,305
충남	100,000	304,903		334,000		592,500	1,574,000		2,905,403
전북	27,500	145,192		163,000		4,500	71,600		411,792
전남	257,500	126,453	415,350	212,000		6,000	437,400		1,454,703
경북	522,500	281,021	6,168,450	2,115,000	6,500	132,400	6,842,900		16,068,771
경남	672,500	63,957	269,100	76,000	16,893		541,000		1,639,450
제주		2,240	900				600		3,740
기타								409,208	409,208
계	4,135,000	2,012,783	6,988,650	6,003,000	26,172	2,341,900	45,549,100	409,208	67,465,813

4) 재해 의연품 모집

구분	단위	이월분	기탁분											합계
			KBS	MBC	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지	기타신문·방송	분화	소계	
의류	점	92,895	50,781	56,903	55,126	75,212	3,484	11,273	3,021	29,681	27,596	271,945	585,022	677,917
모포	매	5,559	4,151	590	800		443	2,700		60		14,619	23,363	28,922
버너	대	4,700	501	20		360				50			931	5,631
생필품	점	18,565	120,114	27,769	7,865	123,552	600,008	7,000	4,110	560	80	19,617	910,675	929,240
신발류	켤레	6,960	2,113	511	140	7,632	100		4,500	1,000		1,254	17,310	24,270
세제류	점	7,534	8,017	9,491	20,005	48,069	3,229	4,840	11,280		2,620	37,456	145,007	152,541
의약품	점		43,023	65,185	2,500	79,582	1,113	1,400	17,149	680		271,764	482,396	482,396
학용품	점	43,451	1,700	21,200	14,467	1,200	1,170		2,119	1,200		4,840	47,896	91,347
식품류	점		245,865	152,578	94,290	159,536	48,447	14,000	4,200	21,246	2,000	7,739	749,901	749,901
라면	상자		325	50	20	5,600	550	1,380			50	1,060	9,035	9,035
식기류	점		3,250		20		7,547			100		3,476	14,393	14,393
백미	kg					440	3,220				800	20	4,480	4,480
양수기	대								1	50			51	51
건축자재	점		50,200	4,373		202,340	4,600		13,000			100,000	374,513	374,513
가구	점		132			362		75				118	687	687
벽지	평		3,840	52,775		13,239							69,854	69,854
기타	점		9,000	166,315	128			220		500		645	176,808	176,808
계		179,664	543,012	557,760	195,361	717,184	673,911	42,888	59,380	55,127	33,146	734,553	3,612,322	3,791,986

5) 재해 의연품 지원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기타	계
의류(점)	9,200	2,720	191,282	65,917	235,912	9,980	40,012	27,094	582,117
침구류(매)		200	15,634	2,010	9,326	7	345	806	28,328
버너(대)		204	2,800	300	1,721	120	456	30	5,631
생필품(점)	950		259,045	135,560	378,999	560	127,389	5,761	908,264
신발류(족)			6,258	3,141	9,219	355	1,683	1,951	22,607
세제류(점)	900		47,536	10,690	61,311	1,320	14,728	2,750	139,236
의약품(점)			142,451	2,800	118,743		12,500	205,902	482,396
학용품(점)			46,412	6,276	20,819		7,840	10,000	91,347
식품류(점)	17,342	2,400	383,036	22,857	231,871	3,189	84,586	4,620	749,901
라면(상자)	370	200	4,646	434	2,050	255	930	150	9,035
식기류(점)			20	4,500	5,702	200	3,500		13,922
양수기(대)			25						25
건축자재(점)			211,513		53,200		110,000		374,713
백미(kg)			600		1,820		2,060		4,480
가구(점)			530		118		41		689
벽지,장판(평)			36,462		20,153		13,239		69,854
기타(점)			3,417	1,675	7,535	162,500	669	126	175,922
계	28,762	5,724	1,351,667	256,160	1,158,499	178,486	419,978	259,190	3,658,466

3. 1999년

1) 1999 재해피해상황(중앙재해대책본부)

가. 피해일시: 1999년 1월1일~12월31일

나. 피해원인: 호우 및 태풍피해

다. 피해내용:

1) 인명 피해

사망·실종: 89명

2) 이재민: 7,415세대/ 26,656명

3) 침수

건물: 13,986동

농경지(기타): 75,948ha

4) 재산 피해: 1,219,673백만원

○건물: 2,502 동 (40,558백만원)

전파: 1,322 동

반파: 1,180 동

○선박: 611척 (2,218백만원)

○농경지: 4,677ha (24,195백만원)

○공공 시설

도로·교량: 2,407개소 (147,051백만원)

하천: 2,183개소 (174,935백만원)

소하천: 3,716개소 (142,609백만원)

어항: 149개소 (6,565백만원)

수리 시설: 2,076개소 (75,484백만원)

소규모 시설: 3,893개소 (91,591백만원)

사방(임도): 575개소 (35,651백만원)

수도: 386개소 (18,079백만원)

수산증양식: 1,144개소 (14,608백만원)

철도: 71개소 (2,800백만원)

군 시설: 615개소 (116,392백만원)

○개인 시설

비닐하우스: 2,127 ha (109,063백만원)

기타: 1식 (217,874백만원)



라. 시·도별 피해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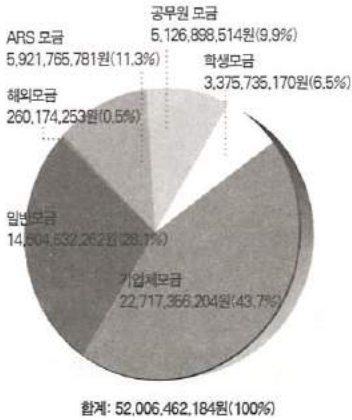
시·도	재산	인명(명)
서울시		10,509
부산시	1	8,732
대구시	1	2,716
인천시	4	10,978
광주시	5	11,580
대전시		1,843
울산시		155
경기도	18	384,597
강원도	17	282,662
충북도		16,639
충남도	3	80,380
전북도		29,547
전남도	8	126,513
경북도	18	115,017
경남도	4	108,374
제주도	10	29,371
계	89	1,219,673

2) 재해 의연금 모금

12월31일 최종

가. 전체 모금

나. 구분별 모금



사별	사별 구분	모금액	비고	(단위: 원)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3,692,448,664	ARS모금분 포함	
	문화방송	6,774,483,861	KBS	3,211,343,861원
	서울방송	1,728,455,775	MBC	1,692,497,480원
	불교방송 외	258,635,196	SBS	879,737,393원
	방협지역회원사	498,771,076	PSB	44,376,010원
	방협비회원사	569,169,211	TBC	7,395,740원
	케이블TV 외	25,028,920	iTV	79,879,627원
	소계	23,546,992,703	조선일보	6,489,050원
신문사	경향신문사	94,138,435	강원일보	32,420원
	국민일보사	527,825,719	전북일보	14,200원
	동아일보사	1,615,779,650	합계	5,921,765,781원
	문화일보사	79,958,418		
	대한매일신보사	487,310,534		
	세계일보사	107,679,847		
	조선일보사	7,238,219,314		
	중앙일보사	1,186,364,260		
	한겨레신문사	111,074,100		
	한국일보사	1,214,734,499		
	매일경제신문사	1,460,722,200		
	내외경제신문사	74,331,132		
	한국경제신문사	1,295,728,731		
	전자신문사 외	33,854,357		
	신협지방회원사	7,437,771,304		
	신협비회원사	328,312,788		
	의화 및 이자	66,792,622		
	소계	23,360,597,910		
분회접수분		5,098,871,571		
합계		52,006,462,184		

3) 재해 의연금 지원

가. 일자별 지원 현황

지원일자	지원금액	피해내역	(단위: 원)
99. 8. 2	159,429,000	99. 7. 1~2 호우피해 구호비	
8. 12	112,000	99. 6. 23~24 호우피해 구호비	
8. 12	8,283,000,000	99. 7. 23~8. 4 호우피해 우선구호비	
9. 7	5,476,441,000	99. 7. 23~8. 4 호우피해 추가구호비	
9. 10	19,002,480,000	99. 7. 23~8. 4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9. 21	179,400,000	추석절 특별위로금(2차분)	
10. 1	8,787,500,000	추석절 특별위로금(3차분)	
10. 27	406,139,000	99. 9. 10일 호우피해 구호비	
10. 27	1,154,300,000	99. 9. 10일 호우피해 위로금	
11. 6	726,199,000	99. 9. 17~24 태풍 '인', '바트' 피해 구호비	
-	2,784,980,000	99. 9. 17~24 위로금	
-	15,000,000	99. 10. 10~11일 호우피해 위로금	
-	634,388,335	긴급물자 구입비, 운송비 외	
계	47,609,368,335		

나. 시·도별 지원 현황

구분	사망 부상자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생계 보조비	세입자 보조비	생계 지원	특별 위로금	긴급물자 구입비외	계
서울	85,000	144,869					556,256	1,416,180		2,201,305
부산	10,000	1,013	1,200				1,506	98,200		111,918
인천	90,000	250,501					497,098	2,341,880		3,179,479
대구	26,000	6,255					1,666	80,060		112,980
대전	7,500	502					6,218	188,820		203,040
광주	50,000	476		1,350			89,258	120,760		261,844
울산		70						5,540		5,610
경기	182,500	642,480			11,000		3,048,567	14,688,420		18,572,967
강원	47,500	39,348					567,632	1,901,820		2,556,300
충북	2,500	469					70,212	81,060		154,241
충남	17,500	69,300					1,141,278	1,244,060		2,472,138
전북	37,500	28,154					1,111,730	451,720		1,629,104
전남	125,000	206,921	26,400	29,700	15,000	1,500	4,328,515	3,168,400		7,901,436
경북	132,500	9,542		1,350	7,000		154,876	606,780		912,048
경남	40,000	49,020	21,600	5,400			391,050	2,605,940		3,113,010
제주	10,000	608,790	43,800				950	2,924,020		3,587,560
기타									634,388	634,388
계	862,500	2,057,710	93,000	37,800	33,000	1,500	11,965,810	31,923,660	634,388	47,609,368

4) 재해의연품 모집

구분	단위	이월분	기탁분													합계
			KBS	MBC	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사	대한매일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제지	기타신문 방송	본회	소계	
의류	점	95,800	66,563	104,299	31,897	62,951	5,522	5,828	6,599	10,434	19,033	32,420	43,502	80,511	469,559	565,359
모포	매	594	3,060			50						347	35	10,256	13,748	14,342
버너	대			250		200								5,000	5,450	5,450
생필품	점	20,976	193,550	69,680	10,600	214,832	48,960	506		58,090	67,020	122,252	649	51,791	837,930	858,906
산발류	컬레	1,663	5,450	754		8,872				50	4,077	1,000	1	9,218	29,422	31,085
세제류	점	13,306	6,000	29,191		11,411				10,008	14,174	12,615	335	8,092	91,826	105,132
의약품	점		33,711	13,161	10,966	110,981				220	9,300	6,030	10	335,886	520,285	520,285
학용품	점					651				19,781	23,332	1,027	38		44,829	44,829
식품류	점		93,275	24,955		194,049	2,400			168,466	4,500	93,209	112	49,527	630,493	630,493
생수	상자		8,114	22,084		5,828			1,840	1,700	2,776	2,846		9,115	54,303	54,303
라면	상자		25	10	100	4,253						1,109	146	107	5,750	5,750
식기류	점	471				1,020						250	888	4,010	6,168	6,639
백미	kg		782			1,140					40		1,600	700	4,262	4,262
양수기	대	26														26
건축자재	점		100,000									30			100,030	100,030
가구	점		111			111								16	238	238
벽지	평		16,549	2,280		9,434					3,840	3,500			35,603	35,603
기타	점	886	2,757		30	147				3,000	560	121		5	6,620	7,506
계		133,722	529,947	266,664	53,613	625,930	56,882			271,749	148,652	276,756	47,316	564,234	2,841,743	2,990,238

5) 재해의연품 지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기타	계
의류(점)	97,456	273,630	3,200	2,400	2,600	18,024	397,310
참구류(매)	2,223	8,346	200	162	350	218	11,499
버너(대)	1,212	3,212	200	150	300		5,074
생필품(점)	67,670	499,753	680	11,830	8,008	7,359	595,300
산발류(족)	3,335	9,839	220	240	1,000	1,167	15,801
세제류(점)	6,260	27,384	690	1,700		4,641	40,675
의약품(점)	38,239	146,340			78	335,628	520,285
학용품(점)	20,531	1,260			5,700		27,491
식품류(점)	163,477	435,717		2,000	2,828	26,471	630,493
생수(상자)	3,535	50,768					54,303
라면(상자)	1,650	2,900			500	700	5,750
식기류(점)		4,188					4,188
양수기(대)		26					26
건축자재(점)	20,000	80,030					100,030
백미(kg)		1,600			1,962	700	4,262
가구(점)		238					238
벽지,장판(평)	13,039	22,564					35,603
기타(점)	1,930	4,522					6,452
계	440,557	1,572,317	5,190	18,482	23,326	394,908	2,454,780

4. 2000년 구호실적

1) 2000 재해피해상황(중앙재해대책본부)

가. 피해 일시: 2000년 1월1일 ~12월31일

나. 피해 원인: 집중호우 및 태풍

다. 피해 내용:

1) 인명 피해

사망·실종: 62명

부상: 54명

2) 이재민: 5,849세대/ 21,000명

3) 침수

건물: 8,579동

농경지(기타): 22,494ha

4) 재산 피해: 509,389백만원

○ 건물: 599동 (11,933백만원)

전파: 148동

반파: 451동

○ 선박: 1,468척 (7,542백만원)

○ 농경지: 1,075 ha (4,231백만원)

○ 공공 시설: 333,509백만원

도로·교량: 623 개소 (33,831백만원)

하천: 1,777개소 (137,841백만원)

소하천: 581개소 (24,772백만원)

어항: 297개소 (44,619백만원)

수리 시설: 1,217개소 (39,260백만원)

소규모 시설: 1,073개소 (23,718백만원)

사방(임도): 209개소 (7,268백만원)

수도: 31개소 (760백만원)

수산증양식: 1,642개소 (21,440백만원)

○ 개인 시설: 152,174백만원

비닐하우스: 429.78ha (14,376백만원)

기타: 2식 (137,798백만원)



라. 시도별 피해액(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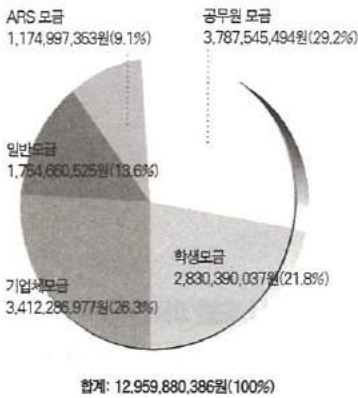
시·도	재산	인명(명)
서울시		
부산시		3,582
대구시		92
인천시	21	19,500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18	169,166
강원도	2	17,800
충북도	1	17,091
충남도	6	23,686
전북도	5	10,712
전남도	2	81,184
경북도	3	40,553
경남도	4	109,225
제주도		16,798
계	62	509,389

2) 재해 의연금 모금

12월31일 최종

가. 전체 모금

나. 구분별 모금



사별	구분	모금액	비고	(단위: 원)	
방송사	한국방송공사	3,855,015,151	산불모금	7,058,328,608원	
	문화방송	2,189,635,616	수재의연금	5,901,551,778원	
	서울방송	327,706,115	ARS모금		
	불교방송 외	45,849,186	산불모금	973,744,110원	
	방협지역회원사	201,597,333	수해모금	201,253,243원	
	방협비회원사 외	73,578,796			
	기타	9,493,411			
	소계	6,702,875,608			
신문사	경향신문사	16,886,950			
	국민일보사	34,922,920			
	동아일보사	366,714,699			
	문화일보사	30,007,850			
	대한매일신보사	172,869,332			
	세계일보사	33,738,100			
	조선일보사	698,739,017			
	중앙일보사	159,469,921			
	한겨레신문사	31,308,662			
	한국일보사	407,979,308			
	매일경제신문사	28,877,024			
	내외경제신문사	2,401,008			
	한국경제신문사	24,250,973			
	신협지방회원사	2,195,189,412			
	신협비회원사	208,986,938			
	의회 및 이자	986,684			
		소계	4,413,328,798		
		ARS 모금액	1,174,997,353		
		분회집수분	668,678,627		
	합계	12,959,880,386			

3) 재해 의연금 지원

가. 일자별 지원현황

(단위: 원)

지원일자	피해내역	지원금액
산불피해	5. 19 4.7~15 산불피해 구호비	73,635,000
	- 4.7~15 산불피해 특별위로금	1,179,140,000
	10. 9 4.7~15 산불피해 농가장기구호비	1,008,204,000
	소계	2,260,979,000
수해피해	00.1.26 '99.12.18~21 폭풍설 피해 구호비	2,010,000
	9. 6 7.14~8.5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5,013,980,000
	9. 8 8.23~28 태풍(프라피룬)피해 특별위로금	4,216,200,000
	10.10 7.22~24 및 8.4~5 호우피해 구호비	455,935,000
	- 2월~6.17가뭄 및 7.14~15호우피해 구호비	13,501,000
	11.14 7.4~12 들쭉 및 우박피해 구호비	16,425,000
	- 8.23~28 태풍 프라피룬 피해 구호비	3,210,404,000
	- 9.12~16 태풍 사오마이 피해 구호비	1,288,091,000
	- 9.12~16 태풍 사오마이 피해 특별위로금	748,820,000
	12.14 8.23~28 태풍 프라피룬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315,900,000
소계	15,281,266,000	
합계	17,542,245,000	

나. 시·도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법정구호비					특별위로금										
		시민자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생계 보조비	생계 지원비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주택전파	주택반파	주택침수	장기생계 구호비	영세 상가	월동 대책비	연료비	명절 위로금	소계
서울시	180,061	35,000	3,054		18,607	56,661		10,000		1,500	107,400			1,800	1,200	1,500	123,400
부산시	166,401	40,000	1,596		22,556	64,161		30,000			66,000		600	3,000	2,640	0	102,240
대구시	80,157	10,000	3,132		37,986	51,117					15,600			8,400	5,040	0	29,040
인천시	376,674	72,500	3,324		26,270	102,094	210,000		4,500	39,600				5,700	5,280	9,500	274,580
광주시	428,729		293		27,576	27,869			12,000	385,200				1,200	960	1,500	400,860
대전시	6,862				262	262				6,600							6,600
울산시	31,917	12,500	721		436	13,657		5,000	6,000	3,000				2,700	1,560	0	18,260
경기도	6,366,477	225,000	48,138	2,000	401,839	676,977	270,000	15,000	102,000	117,000	4,116,000		805,200	72,600	61,200	120,500	5,679,500
강원도	2,379,165	25,000	54,985	5,000	62,596	147,581	20,000	5,000	897,000	10,500	1,800	1,008,204		13,800	122,280	153,000	2,231,584
충북도	61,178	5,000	689		9,489	15,178	10,000		15,000	3,000	10,800			2,400	1,800	3,000	46,000
충남도	1,626,004	35,000	50,717	5,000	866,407	957,124	60,000		57,000	120,000	131,400		3,000	84,000	78,480	135,000	668,880
전북도	526,201	55,000	12,250	2,000	102,891	172,141	50,000		63,000	46,500	97,200		6,600	27,600	20,160	43,000	354,060
전남도	3,010,445	60,000	115,096	18,368	1,215,321	1,408,785	20,000	35,000	102,000	225,000	298,200			273,600	204,360	443,500	1,601,660
경북도	652,424	40,000	16,341		327,483	383,824	35,000		36,000	33,000	93,000			32,400	31,200	8,000	268,600
경남도	1,255,799	50,000	54,896	2,500	699,223	806,619	40,000		27,000	28,500	112,200		34,800	97,200	93,480	16,000	449,180
제주도	403,751	2,500	8,572		164,879	175,951		5,000	24,000	84,000	24,600			28,200	15,000	47,000	227,800
합계	17,542,245	667,500	373,804	34,988	3,983,829	5,060,001	715,000	105,000	1,341,000	676,500	5,505,600	1,008,204	850,200	654,600	644,640	981,500	12,482,244

4) 재해 의연품 모집

구분	단위	이월분	기탁분									합계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조선일보사	한국일보사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	경제지	본회		소계
의류	점	168,049	300	3,800	2,340	1,160			700		33,771	42,071	210,120
침구류	매	2,843			106			65			10,139	10,310	13,153
버너	대	376									10,000	10,000	10,376
생필품	점	263,606			2,863	1,000					91,704	95,567	369,173
신발류	켤레	15,284			250						4,898	5,148	20,432
세제류	점	64,457									2,396	2,396	66,853
학용품	점	17,338									97	97	17,435
음료수	상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0	8,000
식품류	점				340			10,000				10,340	10,340
생수	상자				520						1,008	1,528	1,528
라면	상자				600							600	600
식기류	점	2,451			4,088						7,803	11,891	14,342
벽지,장판	평							567				567	567
기타	점	1,054			10						6,388	6,398	7,452
계			1,300	4,800	12,117	3,160	1,000	11,632	1,700	1,000	168,204	204,913	204,913

5) 재해 의연품 지원

구분	강원	경기	충남	기타	계
의류(점)	20,191		3,600	25,635	49,426
침구류(매)	1,520		300		1,820
버너(대)	376		300		676
생필품(점)	24,016		7,040		31,056
신발류(켤)	2,050		310	3,802	6,162
세제류(점)	9,534		560		10,094
학용품(점)	2,255				2,255
식품류(점)	10,340			8,000	18,340
생수(상자)	520	1,008			1,528
라면(상자)		600			600
벽지, 장판(평)			567		567
기타(점)	68			46	114
계	70,870	1,608	12,677	37,483	122,638

VII. 보도자료

[한겨레] 2001-07-27

신문협회 가뭄성금 2차분 37억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한겨레신문사 사장)는 26일 회원사가 모금한 가뭄극복 성금 2차분 37억235만9282원을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 46개 회원사가 모은 가뭄극복 성금은 지난 6월18일 1차로 전달한 22억원을 포함해 모두 59억235만9282원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대한매일] 2001-06-13

성금 50억 재해현장 전달

〈대한매일〉 등 각 언론사를 통해 모아진 가뭄극복 성금 50억원이 재해현장에 전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각 언론사를 통해 모금한 가뭄극복 성금 50억원을 1차적으로 농림부를 통해 재해현장에 전달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경향신문] 2001-06-13

언론사 모금 50억원 전달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12일 각 언론사를 통해 모금한 가뭄극복 성금 1차분 50억원을 재해현장에 긴급 지원토록 농림부에 전달했다. 성금은 가뭄이 극심한 경기 이천, 강원 철원 등 전국 50개 시·군에 지원되며 양수기 구입(4,000대, 20억원)과 관정설치(75공, 30억원)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조운한 기자 sidol@kyunghyang.com

[조선일보] 2001-06-30

양수기보내기 성금 마감... 총 23억 1737만원 접수 온정에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사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타는 눈에 물을 보냅니다' 양수기보내기 성금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그간 조선일보사에 기탁된 성금은 총 23억1737만1288원으로 7차에 걸쳐 한국신문협회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직접 전달된 성품은 생수 4492상자, 양수기 10대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온정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일보] 2001-06-18

[중앙 포럼] 가뭄의 가면극

반가운 비 소식이 곳곳서 들린다.

비만큼 흡족하지야 않지만 온 국민이 동참한 가뭄극복 성금도 1백억원 넘게 모였다.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5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백억원을 농림부에 전했다.



VIII. 원고 모집 안내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연보〉는 본 협의회 성금관리 및 구호활동 내역을 공개 함은 물론이고, 재해 및 재해 구호활동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발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보를 통해 재해극복 및 재해대책, 재해 구호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논문이나 기술문의 형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원고주제

- 가. 재해극복: 수필 형식
- 나. 재해대책 및 재해 구호활동: 연구논문 및 기술문

2. 원고형식

- 가. 수필 형식: A4 2장 내외 (글씨크기 11포인트)
- 나. 연구논문 및 기술문: A4 5장 이상 (글씨크기 11포인트)
- 다. 작성 방법: 원고제목, 저자명, 소속기관·직위, 본문, 참고문헌, 연락처 순으로 작성

3. 제출 및 문의사항

- 가. 제출방법: 우편 및 전자우편
- 나. 제출처
우. 121-856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연보담당
전화: 02-3272-0123~0125 팩스: 02-3272-0122
전자우편: admin@relief.or.kr

4. 심사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제출시 성명과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